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2026. 6.



|주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주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PROGRAM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 일 시: 2026. 6. 24.(수)~6. 25.(목)

□ 장 소: 그라벨 호텔(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일 정(안)

구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6월 24일 (수)	13:00~13:30	• 등록	
	13:30~13:40	• 개회 및 인사말씀	교육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장
	13:40~14:40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방재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14:40~15:00	• 휴식	-
	15:00~16:30	• 장애대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김도엽 (한경국립대)
	16:30~18:00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및 대학정보공시 이해	방재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18:00~	• 석식 및 휴식	-
6월 25일 (목)	07:00~09:00	• 조식	-
	09:00~10:30	•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지원 방법	고윤자 (이화여대)
	10:30~12:00	• 장애유형별 생활지원 방법 및 지원 사례	김미옥 (대구대)
	12:00~13:00	• 중식	
	13:00~15:00	•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고다운 (인제대)
	14:00~15:00	• 장애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법	임동철 (한경국립대)
	15:00~16:00	• 모두의 캠퍼스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임희진 (서울대)
	16:00~	• 폐회	-

목 차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1
방재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2. 장애대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21
김도엽(한경국립대학교)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및 대학정보공시 이해 51
방재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4.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지원 방법 63
고윤자(이화여자대학교)
5. 장애유형별 생활지원 방법 및 지원 사례 77
김미옥(대구대학교)
6.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95
고다은(인제대학교)
7. 장애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법 103
임동철(한경국립대학교)
8. 모두의 캠퍼스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119
임희진(서울대학교)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방재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방재연 책임연구원

2026. 6. 24(수)



목 차



-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 III 질의 응답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추진 배경 및 기능

추진 배경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23.4.19.시행)에 따라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지정 의무화
- [전담기관]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지원대상] 고등교육기관* 및 장애 대학(원)생**
 -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법 상 설치된 고등교육기관
 - **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대학(원)생

기능

-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연구·자료개발 보급, 컨설팅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고등교육센터의 업무)]

①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②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③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④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⑥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⑦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내용

①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 교육활동 지원: 일반·전문 지원인력 인건비,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 보조기기 지원: 대학 및 개인 대상 보조기기 지원
- 대학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대학의 자율 희망 사업 및 대학 내 인식개선 교육 지원

②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 진로·취업 지원 유형: 권역별 장애대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통합 지원 유형: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포함 권역별 대학의 장애학생 종합적 지원 역량 강화 등
-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발달장애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공유·확산 지원

③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컨설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수행

④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연구 및 자료 개발 등

-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분석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등교육 기반 구축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구분	교육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교육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문 지원인력 인건비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 대응투자(교비) 20% 이상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대상 지원 • 개인 대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자율사업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3년 연속 교육활동 지원사업(연 1회 이상) 참여 대학 대상 • 대학 내 인식개선교육 지원
사업신청 및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기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2~3월, 2학기: 8~9월 • 선정 후 학기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1월 1일~8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여름계절학기 포함 - 2학기(8월 말~12월 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기본계획 안내 생략(동일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회 신청(2월~3월) • 선정 후 연간 운영(26년 1월 1일~12월 31일) 	
제출서류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수신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www.kcue.or.kr) - 공지사항 참조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구분	지원내용
일반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한 대필·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등 지원 *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일반교육지원인력으로 활동 가능 [재학 중인 대학생을 활용한 일반 지원은 동 사업이 아닌 국가근로장학금으로 지원]
전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대학[원] 학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교정사, 화면해설사 등 전문인력 활용 지원 [시급]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만 전담하는 전문교육지원인력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자막 제작비, 화면해설 제작비, 실시간 속기 및 문자통역 등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이용료 * 여러 과목을 신청하는 대학은 과목별 우선 지원 순위를 설정하여 신청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겨울계절학기, 1학기, 여름계절학기 : 2026년 1월 1일 ~ 8월 말
 - 2학기 : 2026년 8월 말 ~ 12월 31일
- 지원기준

유형	구분	기준단가	재원		비고
			국고지원	대응투자	
일반 교육지원인력	일반 교육지원인력	[시급] 11,000원	8,800원	2,200원	국고지원 80%
	전문 교육지원인력	[시급] 32,000원	25,600원	6,400원	
	원격프로그램 운영비 (과목당)	[상한] 11,000,000원	8,800,000원	2,200,000원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교육지원인력 운영 기준
 -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 (근로시간 상한제)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 ※ 1명의 교육지원인력이 다수의 대학에 동 사업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
 - (국고지원 한도 및 최저임금 준수) 제시된 시급 이하로만 국고지원 신청 가능하며, 최저임금 준수 필수
 - 제시된 시급 이상 집행이 필요한 경우 교비 대응투자로 충당
 - (전담인력, 시급 적용) 고유 업무 외 다른 업무 겸직 시 국고 지원 불가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
 - 원격 프로그램 운영비는 실비 기준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수강 신청 정보, 수강 필수과목 여부, 학생의 지원 신청 내역 등을 기반으로 해당 견적을 받아 신청
 - ※ 수강신청 정보, 지원 신청 내역,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필수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사전교육 운영 기준
 - 사전교육 실시
 - 교육지원인력 당 연1회 이상 사전교육(120분 이상) 의무 실시
 - 기본교육(장애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현장실습형(장애체험 등) 교육 병행
 - ※ 서류 대체 및 40분 이내 단기교육은 사전교육 시간 불인정, 개인 봉사활동 등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교육은 지급 제외
 - ※ 사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인식개선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인력의 사전교육비(활동비) 지급은 최대 2시간까지 교육지원인력 인건비*로 지원 가능
 - * 비용집행 시 활동보고서 상 지급 근거 마련(인정시간 작성) 필수, 이수 증빙자료는 대학 보관
- 활동보고서 작성
 - 교육지원인력 활동 내역 확인·점검을 위한 보고서 관리
 - ※ 공고문에 제시된 양식 [대학보관자료: 교육지원인력 활동 보고서] 필수 사용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교육활동 지원
 • 교육지원인력 세부 유형 및 지원 내용

영역	내용
학습 지원	•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에 실시간 문자 또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인력
	• 수강신청, 강의 대필, 각종 평가 대필 등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 실험, 실습, 강의참여 등 수업보조 [예] 지체장애학생-실험, 실습 보조, 시각장애학생- 발표 및 과제 수행 보조, 기타 수업보조가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인력 등
	• 도서관 서비스 이용 전반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예] 도서관에서 자료 수집 및 열람 지원
편의 지원	• 수어 및 문자통역, 점역 지원 등의 역할 수행(속기사, 수어통역사, 점역교정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수업 이동, 학생(기숙사) 및 기타시설 이동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 장애학생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일상생활을 보조해 주는 교육지원인력 [예] 물품정리, 식사, 신변처리 등
	• 장애학생의 학교 활동이나 프로그램 참여 등을 도와주는 교육지원인력 [예] 교내 취업특강, 교내 특성화 프로그램 등 참여시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인력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조기기 지원
 • 지원 내용 및 기준

영역	대학 대상	개인 대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다수에 의한 공동 이용 또는 비특정 개인 대상으로 단기 대여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 수업 지원용, 이동 지원용, 장애학생 전용 학습공간 비치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장애학생 개인 대상으로 졸업 시(또는 학적변동 시) 까지 안정적 장기 이용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보조기기 구입 지원
금액	• [학교당] 최대 1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당] 최대 6백만원, 학교당 최대 3명까지 ※ 단일 품목의 단가가 국고지원 최대를 상회하는 경우 그 단가까지 1개 수량 한정 신청 가능
운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장애학생 현황 및 보조기기 구비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 •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보조기기 운영비는 보조기기 사업비 신청액의 15% 이내에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대학 간 상호 협의하여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기기 구매를 주관할 대학(이하 주관 대학)을 선정하고 주관 대학을 통해 일괄 신청 가능 • 대학별 장애학생 신청 및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부터 본 사업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의 수리·보수 비용(소모품 구입비는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 또는 2가지 이상의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 타 부처, 민간단체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원활히 구비할 수 없는 경우 등 복합적으로 고려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지원 가능 및 지원 불가 품목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기기 지원 가능
[예: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라벨러, 점자프린터, 탁상용 확대독서기, 태블릿확대기 등]
 - 장애유형별 특성과 직접 관련성 없는 일반 기기 지원 불가 [예: 노트북, 태블릿 등]
 - 필요 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사업수행기관, 교육부 협의 통해 결정
- 보조기기 활용도 제고
 - 대학은 보조기기 구입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학기초부터 학생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국고 지원을 통해 구비한 보조기기는 다른 대학과 공유 사용 가능
 - 보조기기 관리대장 활용하여 보조기기 관리 및 대여 현황을 철저히 관리
- e나라도움 예산집행 관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된 예치형 사업비를 실집행 전 대학 자체 통장으로 이체 불가하며,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은 전자세금계산서, e나라도움 카드 등 지출 증빙을 활용하여 e나라도움에서 직접 집행하여야 함.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대학 자율사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23년부터 '교육활동 지원 사업' 에 계속(연 1회 이상)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대학별 사업 제안)하여 사업계획서 심사(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 ※ 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 등에 소요되는 시설 공사비, 장비 구입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은 지원 제외
- 지원기준

구분	국고지원	대응투자	비고
대학 자율사업 지원	[학교당] 최저 3백만원 ~ 최대 15백만원	없음 [자율]	국고지원 100%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4.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인식개선교육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 대상 사전교육 및 홍보, 장애 및 비장애학생·교직원 등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교육환경 개선 관련 소요 경비* 지원
 - * 대학 차원의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보조기기 지원 운영 개선을 위한 소요경비 포함
- 지원기준

	구분	국고지원	대응투자	비고
유형				
인식개선교육 지원		[학교당] 정액 1백만원	없음(자율)	국고지원 100%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사업개요

구분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 [12개월]		
지원예산	• 총 840백만원		
지원내용	• 9교 선정 • 교당 50백만원 지원	• 2025년 선정 대학 중 3교 선정 • 교당 78백만원 지원	• 2교 선정 • 교당 78백만원 지원
주요사항	• 맞춤형 진로설계 및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협의회 운영 등	•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 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및 교육활동 지원 등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체계 구축 등
제출서류 및 방법	• 전자문서(수신처: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www.kcoe.or.kr)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 공지사항 참조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기대 효과

-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통합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진로·취업교육 규모·효율화 추진 및 성과 확대
- 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산업체, 지자체 등과 협업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취업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
- 관련 협의회를 통한 홍보 강화로 권역 내 대학 참여 활성화 및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기회 확대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 캠프, 채용 박람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온라인 특강 등 학생 수요와 만족도 고려한 다양한 참여 기회 제공 • (진로설계 지원) 장애학생 개인의 적성·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여 진로·취업지원 효과성 제고 • (취업 역량 강화 지원) 현장 직무역량 및 문제 해결력 제고를 위해 현실 적합성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학생 취업 역량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지원 대학의 역할 정립) '장애학생 지원 선도대학'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장애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부터 교육활동 지원까지 다양한 역할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발달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 및 확산 추진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의 역할		
구분	진로·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1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유형 • 권역 내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권역 및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국 단위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박람회 등 운영
2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구비 및 타 대학 필요 시 보조기기 지원 • 공통 과목 등 교육자료 공동 개발·배포
3	권역 내 대학 멘토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운영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또는 대학 대상 '장애학생 지원' 관련 멘토 역할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협의회 지원 • 전국 단위 교육지원인력 풀 관리
4	협력 강화 • 통합형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 협조 및 지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대학 담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장애학생 지원 관련 매뉴얼 제작·배포 등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 선정 절차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	선정 평가	사업 착수
사업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 신청서 제출	선정평가 실시, 운영위원회 심의, 사업추진 대학 선정	대학 지원금 교부 및 착수협의회
교육부, 대교협	대학	대교협	대교협, 대학

- 선정 조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기관평가인증대학)
전담인력 인건비 일정 부분 지원 가능 대학(*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인건비 사용 가능)
- 선정 평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필요시 대면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5.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2026년 기준)

구분	권역	대학명	비고
진로·취업 지원 유형	수도권	강남대학교	
		경민대학교	
		단국대학교	신규
		서정대학교	신규
		인천대학교	
	중부권	한국교원대학교	신규
	동남권	부산경상대학교	신규
	호남권	남부대학교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통합 지원 유형	수도권	한경국립대학교	
	대경권	대구대학교	
	동남권	부산대학교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수도권	협성대학교	신규
	대경권	호산대학교	신규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6.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권역별 사업 수행대학 현황(2026년 4월 기준)

권역별 사업수행대학 현황 (2026년 4월 기준)

- 1 대학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대학 현황
- 2 대학별 사업수행 대학 현황
- 3 사업수행 대학 현황

지역별

-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 충청권 (충청, 전북, 전남)
- 3 호남권 (전남, 전북, 광주, 전남)
- 4 강원권 (강원, 경기, 충청, 전북, 전남)
- 5 제주권 (제주)

대학유형

- 1 일반대학 (4년제 대학)
- 2 전문대학 (3년제 대학)
- 3 사립대학
- 4 국립대학
- 5 군부대학교

지역별 대학유형

-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2 충청권 (충청, 전북, 전남)
- 3 호남권 (전남, 전북, 광주, 전남)
- 4 강원권 (강원, 경기, 충청, 전북, 전남)
- 5 제주권 (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Tel. 02-6915-7001-6 E-mail. support1@kcue.or.kr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총 90교
 - 교육활동 지원: 1학기(54개교)
 - 보조기기 지원: 대학(52교), 개인(11교)
 - 대학자율 지원: 11교
 - 인식개선 지원: 35교
-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총 14교
 - 진로취업 지원 유형: 9교
 - 통합 지원 유형: 3교
 -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2교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장애학생 선발·지원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구분	학교종류	학교수	소계
일반대학	대학	182	197
	교육대학	10	
	산업대학	2	
	기술대학	1	
	각종학교	2	
전문대학	전문대학	125	125
원격대학	사이버대학(대학)	18	21
	사이버대학(전문대학)	2	
	방송통신대학	1	
합계		343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일반현황	1. 대학 기본 정보	9	9
	2. 장애학생 현황	3	3
	3. 장애학생 입학 현황	3	3
	4.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현황	1	1
	소계	16	16
선발·지원 체제	1.1 입시 및 선발 지원	4	4
	1.2 장애학생 지원 체제	14	14
	소계	18	18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	6	6
	2.2 교수·학습 지원	16	16
	2.3 진로 및 취업 지원	6	6
	소계	28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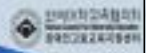
I.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7.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시설·설비	3.1 매개시설	4	4
	3.2 내부시설	5	5
	3.3 위생시설	2	2
	3.4 안내시설	2	2
	3.5 강의실	2	2
	3.6 도서관	2	-
	3.7 강당	2	-
	3.8 식당	2	-
	3.9 학생지원시설	3	-
	3.10 기타	3	1
	소계	27	16
장애학생 만족도	4.1 선발·지원 체제	3	3
	4.2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9	9
	4.3 시설·설비	6	-
	소계	18	12
	합계	107	90

-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 ### 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센터' 운영 추진
 - [거점대학 운영]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 확대 추진'
 - ※ [23] 10교 → [24] 10교 → [25] 12교 → [26] 14교 → [27] 15교
 - [대학별 지원체계 강화]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22년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설치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의 전문성* 강화
 - *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관련 자격을 갖춘 자
 -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관계 교직원, 장애학생 등)를 통해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활성화
 - 안내자료* 제작·배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개별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전문성 강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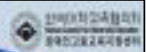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1.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

-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교육과정 모델 개발)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모델 개발, 문화예술 특성화 대학 발굴 등 수요자 중심 교육 기회 확대
 - (대학체험·적응 지원) 장애학생 대상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 (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인력·기기 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 개선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2.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추진 계획(안)

-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 수행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장애대학생 종단연구 설계 방안 연구
-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역량 강화
 - 담당자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장애대학생 통합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안내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장애대학생 포털 및 홈페이지 구축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 대학 포털 구축
 - 장애대학생 종합지원 사업관리 포털 구축

II. 장애학생 지원 고등교육 정책 방향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평가) 제2항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

질의응답





2

장애대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김도엽(한경국립대학교)



장애대학생을 위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한경국립대학교 교육연구사 김도엽

소개



<주요 경력>

- (2022.9~현재) 한경국립대학교 교육연구사
- (2013.9~2022.2) 교육부 국립특수학교(발달, 지체) 교사 및 부장교사
- (2009~2012) 울산광역시 특수학급 교사

<주요 활동>

- (2024) 한국특수체육학회 상임이사 및 학교체육분과위원장
- (2023) 2022 개정 특수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군, 중학교 체육과(지체장애)
국정도서 심의 의원

목차



1. 대학과 장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의 의미와 역할- 4년제 대학 장애학생 수(25년 정보공시 기준)- 장애학생 입학 증가 추이- 장애학생 지원의 필요성	4.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립 근거- 유의점- 수립 절차 및 구성 내용- 점검 및 관리
2.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과 필요성-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장애대학생 지원 절차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경국립대학교 개인별교육지원 시스템
3.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에 근거한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별 특성 이해-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대학과 장애학생



대학의 의미

- 고등교육 기관
- 학문의 전당
- 지식 창출 공간
- 사회적 기여 역할
- 지식 발전의 중심



장애학생 입학 증가

- 1995년 특별전형 도입
- 2018년 9,345명
- 2022년 9,839명
- 지속적인 증가 추세
- 고등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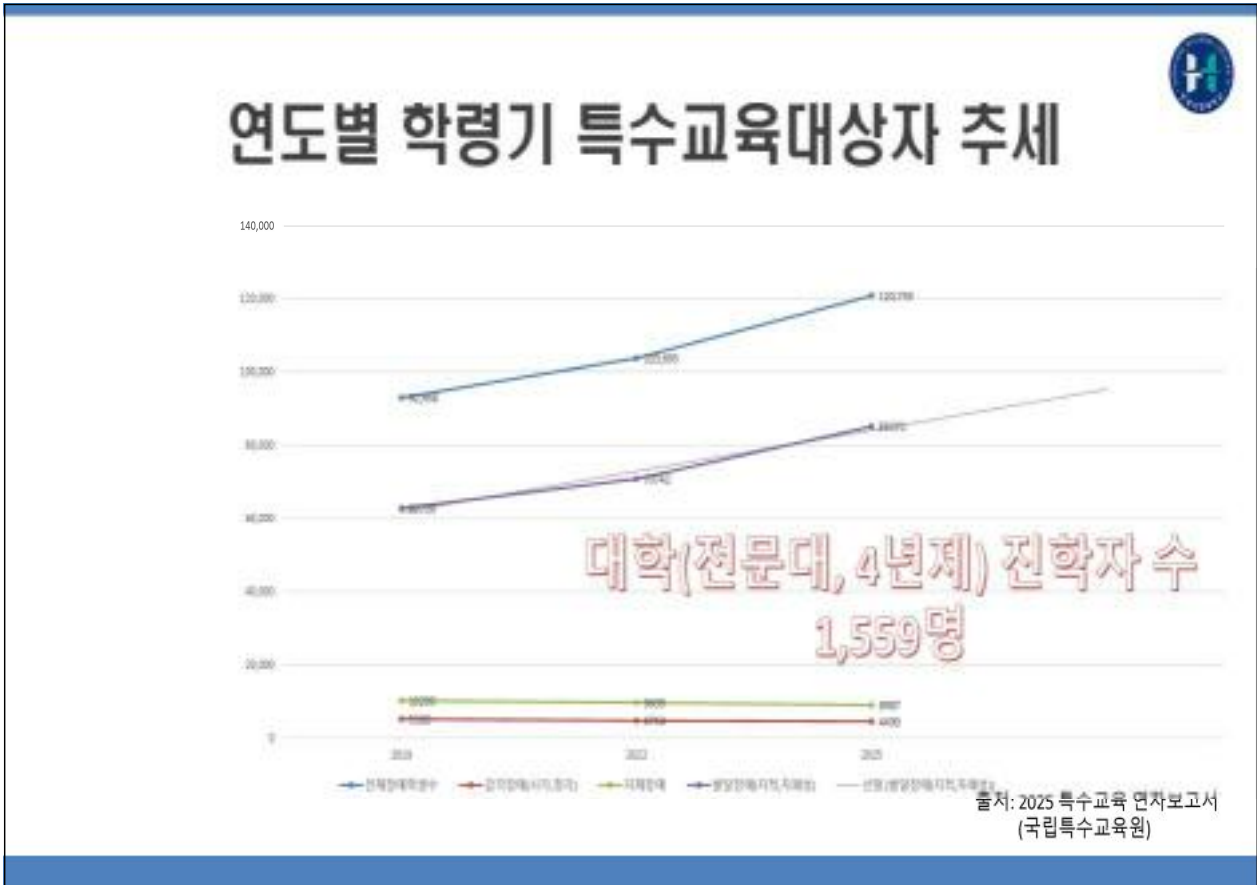
장애학생 지원 필요성

- 학습권 보장
- 맞춤형 지원 제공
- 대학생활 적응 지원
- 평등한 교육 기회
- 사회 통합 촉진

연도별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체 장애	지체 장애	정신·행동 장애	지체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9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10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8)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6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67 (10.7)	103,895 (100)
2023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
2024	1,698 (1.5)	2,842 (2.5)	57,883 (50.1)	9,263 (8.0)	1,785 (1.5)	22,194 (19.2)	2,600 (2.2)	1,065 (0.9)	1,979 (1.7)	14,301 (12.4)	115,610 (100.0)
2025	1,678 (1.4)	2,812 (2.3)	59,456 (49.3)	8,987 (7.4)	1,643 (1.4)	25,614 (21.2)	2,681 (2.2)	1,121 (0.9)	1,924 (1.6)	14,819 (12.3)	120,735 (100.0)



4년제 대학 장애학생 수(2025년 정보공시 기준)

(단위:명)

전체 장애학생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뇌병변	발달장애 (지적, 자폐)	기타
4,939	678	683	2,066	1,115	397

장애학생 대학 입학 증가

특별전형 제도 도입

- 1995년부터 시행
-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목적
- 직업 재활 도모
- 대학 진학을 상층에 기여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
-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 지원
-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 맞춤형 지원 제공 역할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방안



맞춤형 학습 및 생활지원

- 장애유형과 정도 고려
- 학업 수행 어려움 해소
- 대인관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수강신청 및 과제제출 지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신설

- 개별적 요구 반영
-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
- 매 학기 수립 및 점검
-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 실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필요성



교육지원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특수교육법 및 차별금지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핵심 조항
- 교육기회 평등권 보장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고등교육기관의 지원 의무

-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 편의시설 및 설비 제공
- 교직원 인식개선 교육



장애대학생 현황과 중요성

- 장애대학생 재학생 증가 추세
- 교육권 보장의 사회적 의미
-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 필요
- 학업 성취 지원 체계 구축



마음의 베리어 프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 주저함이 없이 마음 속 장벽을 허물자는 것”

2020년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대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이 대두 되며 기존의 베리어 프리법에 ‘마음의 베리어 프리’ 항목을 추가하여 개정함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개념과 필요성

장애학생 대학 생활 어려움

- 학업 수행 어려움: 강의 내용 이해, 과제 제출 등
- 대인관계 형성 어려움: 동아리 활동, 팀 프로젝트 등
- 물리적 환경 제약: 강의실 접근성, 이동의 어려움
- 정보 접근 한계: 수업 자료, 학사 정보 등의 접근성 문제
- 심리적 부담: 차별, 소외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정의

- 장애 대학생 개별적 요구를 반영한 체계적 지원 계획
- 매 학기마다 수립되어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 제공
- 학업, 생활,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맞춤형 계획
- 장애학생 학습권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핵심 도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필요성

01

공급자 중심 지원 한계

- 일반화된 지원으로 개별 요구 반영 미흡
-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 학생의 실제 필요와 지원 간 불일치
- 지원의 효과성과 만족도 저하

02

수요자 중심 지원 필요성

- 장애학생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 반영
- 학업, 생활, 진로 등 다양한 영역의 맞춤형 지원
-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존중
- 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

03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효과

-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중도 탈락률 감소
- 대학 생활 적응력 및 만족도 증가
- 진로 및 취업 준비 기회 확대
- 장애학생의 권리 보장 및 교육 기회 평등 실현

장애대학생 지원 절차

■ 장애대학생 지원 절차

```

graph TD
    A[장애 등록 완료 및 지원 희망] --> B[즉시 지원 개시]
    C[미등록 상태 또는 중도 장애 발생] --> B
    C --> D[의사 소견서 및 진료기록 제출]
    D --> E[특별지원위원회 심의 및 의결]
    E --> F[학내 장애학생으로 등록]
    F --> B
    
```

*명확한 진단 내용이나 증명 자료 없이 지원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을 사전 안내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지원 방법

법에 근거한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행동장애
6. 자폐성 장애
7. 의사소통 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장애인 복지법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 요루 장애인
15. 뇌전증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전체 장애 인구 265만 명
(출현율 5.4%)

선천적 장애 (주로 발달장애)

후천적 장애 90% 이상 (질병, 사고 등)

교육지원 실무자는 복지법상 15개 유형을 넘어, 교육 현장에 특화된 '특수교육법'상의 포괄적 장애 유형(학습장애, 발달지체 등)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 지원 목적)	장애인복지법 (복지 및 의료 혜택 목적)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시각, 청각, 지적, 지체, 뇌병변, 정신, 자폐성,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 총 15개 법정 유형

장애 유형별 특성 이해

01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

- 시각장애 학생
 - 촉각 및 청각 정보에 의존(점자자료, 화면낭독 프로그램, 확대자료 등)
 - 저시력 학생: 화면 확대기, 캔다 등 제공
- 청각장애 학생: 시각 정보 중심 학습을 선호하며 수어통역, 문자통역, 자막
- 지체장애 학생: 이동 및 필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필 지원, 보조기기, 접근 가능한 좌석 배치

02



발달장애 및 정신적 장애 학생의 교육적 요구

- 발달장애 학생 - 구조화된 학습 환경과 명확한 지시, 반복 학습, 시각적 자료 제공
- 정신적 장애 학생 - 스트레스 관리, 유연한 출석 및 과제 제출 일정, 심리상담 연계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03



의사소통 방식과 학습 접근성 이해

- 장애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필요
- 수어, 구화, 문자,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등 다양한 방법 존중
- 학습자료 형식도 점자, 음성,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하게 제공

시각장애 학생 이해하기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시각장애 학생 학습 지원

전맹학생

명



- 시각 기능 없음
- 청각 및 촉각에 의존
- 점자 활용

- 음성파일, 점자파일, 양각화 된 시각자료, 점자정보단말기 등 제공
- 강의 자료: 자료는 PPT나 PDF 형태의 자료 보다는 한글이나 텍스트 자료로 사전 제공

저시력

부력



- 시각 기능 세함
- 확대, 확대제, 보정기 활용

- 확대 자료, 휴대용 독서확대기, 보이스 아이 등 제공

출처: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매뉴얼(국립특수교육원)

청각장애 학생 이해하기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학생의 의사소통 수단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 요구	지원 방안
구어	• 음성언어 보완할 수 있는 문자언어 지원	• 노트북 대필 지원 • 문자 통역(속기) 지원
수어	• 음성언어 수어 통역 • 음성언어 보완할 수 있는 문자언어 지원	• 수어 통역사 배치 • 노트북 대필 지원 • 수어-문자 통역 원격지원
구어-수어 병용 기타 언어 수단	• 개별 특성 및 선호도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 요구에 차이가 있으므로 요구를 파악 후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함	

청각장애 학생 학습 지원

아



- 수어로 언어정보를 수용하고 표현
- 수어 통역
- 문자 통역(속기)

+ 한국어로 언어적 정보처리 불가
+ 수화 필요

난청



- 잔존 청력 등을 활용하며 언어정보를 수용하고 구화로 표현
- 문자 통역(속기)

+ 보청기 착용과 구화 후 언어가 잘 들린다
+ 구화할 수 있음
+ 구화 불가능
+ 청력은 상당히 높고 인공청각장치(보청기) 착용을 통해 듣고, 구어로 소통하는 의사소통 방법

지체장애 학생 이해하기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체장애인 (척수장애, 절단장애, 왜소증 등) + 뇌변장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지체장애

지체장애 학생 학습 지원



- **베리어 프리 환경** 제공
(높낮이 책상, 이동 공간 확보, 넓은 책상, 앞자리 등)
- **보조기기 지원**(노트북, 독서대, 논슬립 매트 등)
- 대필지원, 시험시간 연장, 필기시간 제공, 강의 자료 사전 제공, 충분한 발표시간 제공 등

지적장애 학생 이해하기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구분	관련 영역
지적능력	기억, 주의집중, 추론, 문제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학습 등
적응행동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생활, 사회성 기술, 지역사회 활용, 자기주장과 옹호, 건강과 안전, 여가, 직업 등

지적장애 학생 학습 지원



-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보다는 **쉬운 단어** 사용
- 주의집중을 높일 수 있게 **학습 자료 다양화**
(음악, 동영상, 그림, 사진, 구체물, 실습 등)
- 반복 학습을 위해 **강의 자료 등을 제공**
- 수업 중 **휴식시간** 부여
- **시각적 자료**(이미지, 도식화 등)을 활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5조제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적으로 분류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중·중등장애	다발성장애	지식소통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문화장애	

자폐성장애 학생 이해하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시각적 일과 안내			
① 오리엔테이션	② 멘토와의 만남	③ 점심 식사	④ 친로 특강
대강당	프로그램실	학생 식당	대강당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자폐장애 학생 학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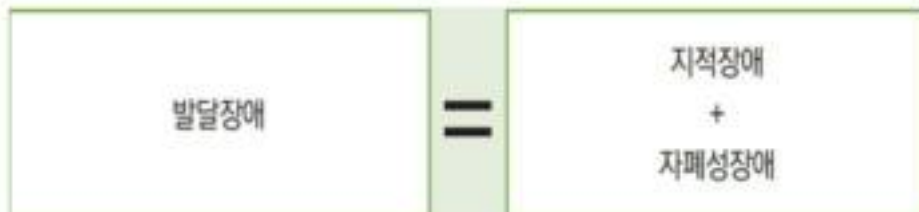


- 주변 환경 요인 제거(주의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는)
- 예측 가능하게 수업 시간표 미리 안내(강의실 변경 등)
-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보다는 쉬운 단어 사용
- 주의집중을 높일 수 있게 학습 자료 다양화
- 수업 중 휴식시간 부여
- 시각적 자료(이미지, 도식화 등)를 활용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통칭하는 용어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와 유니버설 디자인

01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교수법(UDL) 적용

- 다양한 표현 방식 제공- 시각·청각·촉각 자료 병행
- 학습자 참여 방식 다각화로 능동적 학습 유도
- 개별 학습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유연한 수업 설계

02



다양한 학습 양식을 고려한 멀티미디어 활용

- 강의 영상에 자막 및 수어 제공
- 음성 설명이 포함된 시각자료 활용
-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을 조합한 학습 콘텐츠 구성
- 학습자 선택권 보장

03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접근성 개선

- LMS 화면 읽기 프로그램 호환성 확보
- 키보드만으로 모든 기능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
- 명확한 메뉴 구조와 일관된 인터페이스 제공
- 자료 다운로드 형식 다양화

강의실 내 합리적 편의제공



강의자료의 접근성 향상

- 대체 형식 자료 제공
- 강의 영상 자막 삽입
- 전자 및 확대 자료
- 사전 자료 배포



시험 및 과제 편의제공

- 시험 시간 연장 허용
- 대필 및 대독 지원
- 별도 교사실 제공
- 과제 제출 기한 조정



보조공학기기 및 환경 조정

- 화면낭독 프로그램 지원
- 높이 조절 책상 비치
- 접근 가능한 좌석 확보
- 보조기기 사용 허용



평가 및 피드백 전략



공정한 평가 방법

- 학습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
- 과정과 결과 균형 있게 고려
 - 합리적 편익 제공
- 평가 기준 사전 명확화



다양한 평가 도구 활용

- 구술시험 기회 제공
- 포트폴리오 평가
- 프로젝트 기반 평가
- 실습 및 실연 평가



개별 맞춤형 피드백

- 강점과 개선점 구체적 제시
- 정기적 학습 진행 상황 공유
- 긍정적 강화를 통한 동기 부여
-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심리·정서적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

01



심리적 어려움 이해 및 상담 연계

-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 인식
- 학생상담센터 적극 연계
-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교실 분위기 조성
- 개별 상황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배려

02



도래 관계 형성 및 사회적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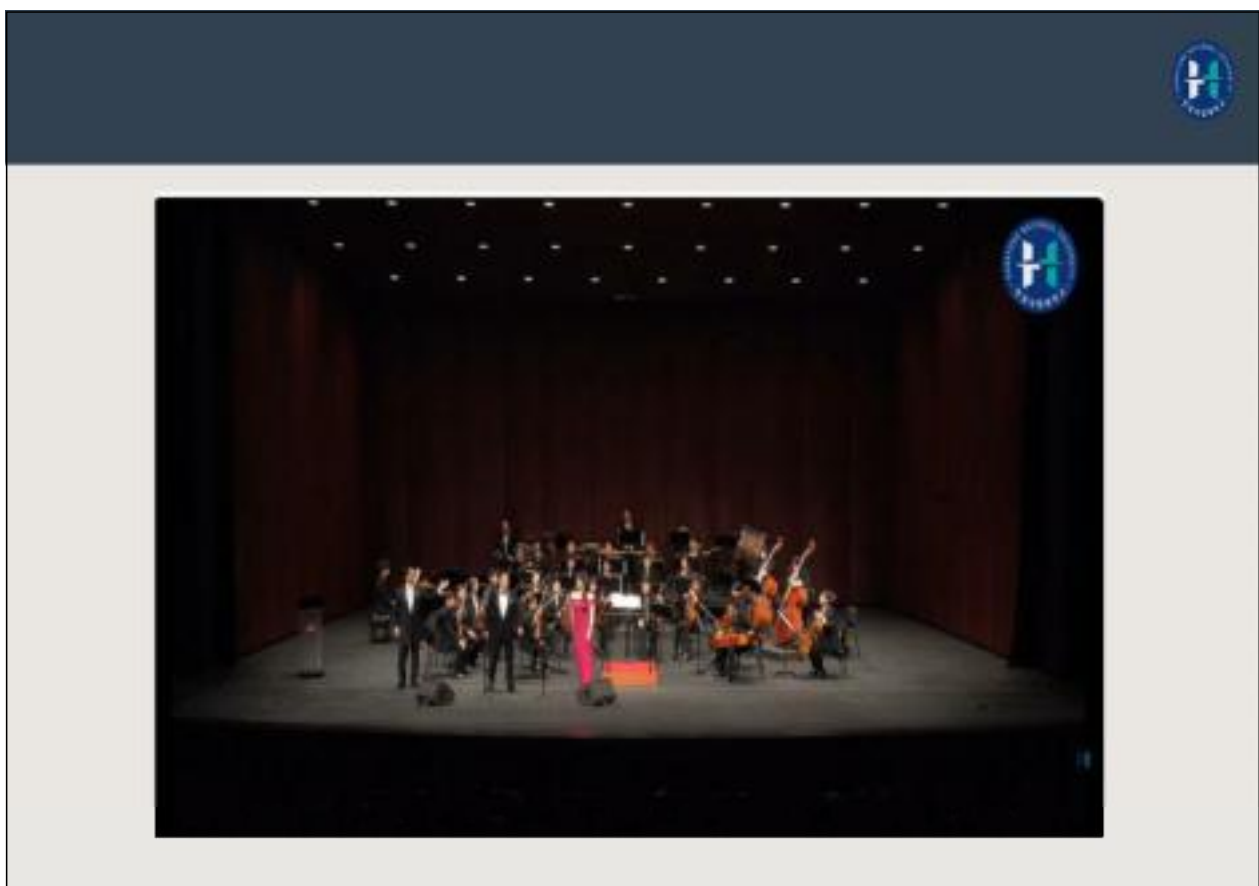
- 조별 활동 시 자연스러운 참여 기회 제공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캠퍼스 내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 장려
- 비장애 학생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촉진

03



자기옹호 능력 향상 지원

- 자신의 필요와 권리를 표현하는 방법 교육
- 합리적 편익 요청 절차 안내
- 자기결정권 존중 및 선택권 부여
- 성공 경험을 통한 자신감 향상 지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근거

법적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근거
- 전체 장애학생 대상
- 대학의 의무사항으로 규정
- 매 학기 수립 및 보고 의무화

대학 내 지원 매뉴얼

- 교육부 발행 매뉴얼 참조
- 희망 학생 대상 수립 권장
- 학생의 자기결정권 존중 강조
- 대학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적용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제31조**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1)**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0조(1)**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제30조(1)**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 장은 **법 제30조의2(1)**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시 유의점

자기결정권 존중	전체 장애학생 대상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공개 여부 학생 선택 존중- 지원 수용 여부 결정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준수- 학생의 의사 지속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장애학생 대상 초기 상담 실시- 개별 면담을 통한 수요 파악- 미희망 학생 근거 자료 확보- 매 학기 수요 조사 반복 실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절차

- 1 수요조사 실시**
 -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 개별 면담 진행
- 2 계획 수립**
 - 조사 결과 반영
 - 맞춤형 계획 작성
- 3 심의 및 보고**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 대학의 장애계 보고
- 4 고지 및 지원 제공**
 - 개인, 학과 등 고지
 - 학습 및 생활 지원
- 5 점검 및 관리**
 - 정보 제공 동의 확인
 - 재한적 정보 공유

환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사례



한경국립대학교 흐름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구성 내용

법적 근거	기본 정보 기재	장애 관련 상세 정보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2항 - 장애 유형과 정도, 필요한 지원 수단 및 기간 포함 - 각 대학의 장애 세부 사항 결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기본 인적 사항 상세 기록 - 비상 연락처(보호자) 파악 - 응급 상황 대처 및 의사소통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 정도, 중복 장애 여부 - 건강 상태 및 약물 복용 여부 - 기타 건강 관련 정보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원하는 지원 사항 - 세심하고 맞춤형 지원 제공 목적 - 개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구성 내용



- 장애학생 요구 사항 확인**
 - 학생의 개별적 요구 반영
 - 다양한 지원 사항 명확히 확인
 -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계획 수립
- 지원 내용 선택 항목**
 - 교수학습 지원
 - 평가 지원
 - 대체자료 및 보조기기 지원
 - 생활 편의 지원
 - 상담 및 진로(취업) 지원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 정보 오기재 방지 위한 재확인 절차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점검 및 관리



- 01 체계적인 관리**
 - 정기적 상담
 - 지원 효과 점검
 - 요구사항 검토
 - 데이터 누적 관리
- 02 개인정보 관리**
 - 정보 취급자 제한
 - 유출 방지 철저
 - 보안 시스템 구축
 - 정기적 점검 실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사례



한경국립대학교 개인별 교육지원 시스템

통계

- 장애학생 통계
- 장애학생 정보 조회

통합수요조사관리

- 기초자료관리
- 온라인조사
- 담당자업무
- 관리자업무

시스템 설문조사

속기록

상담, 학업, 취업 관리


만족도 조사



결론

⇓

- 장애학생 지원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통한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학생의 잠재력 발휘
-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 제공
-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대학 문화 조성의 중요성



감사합니다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및 대학정보공시 이해

방재현(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및 대학정보공시 이해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방재연 책임연구원

2026. 6. 24(수)



목 차



- I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 III 질의 응답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목적 및 근거

추진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장애학생 선발·지원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제13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고등교육법」 제34조
-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23~’ 27)」 4-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제 강화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목적 및 근거

추진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제2항**
 -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추진 목적 및 근거

실태평가 vs 실태조사

구분	2020 실태평가	2023 실태조사
조사기간	17년 2학기~20년 1학기(3년)	22년 1~2학기(1년)
영역	3개 영역(선발, 교수학습, 시설설비)	4개 영역(선발지원 체제, 교수학습 지원,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
점수 및 등급	캠퍼스별 점수 및 등급 부여	점수 및 등급 없음
보고서 제출	공문 및 우편 제출	공문 제출
제외신청	신청서 제출 후 제외	없음
현장면담	3개 영역 현장방문평가(200개교 내외)	심층 면담
결과공표	전체 대학의 실태평가 결과 및 개별 대학의 등급 대국민 공표	전체 대학의 실태조사 결과 대국민 공표
인증 및 표창	최우수대학 인증 현판 수여 부총리 및 장관 표창	없음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요

조사 주체

-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조사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요

구분	학교종류	학교수	소계
일반대학	대학	182	197
	교육대학	10	
	산업대학	2	
	기술대학	1	
	각종학교	2	
전문대학	전문대학	125	125
원격대학	사이버대학(대학)	18	21
	사이버대학(전문대학)	2	
	방송통신대학	1	
합계		343	



1.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주요 사업 안내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요

조사 절차

- 조사 절차 및 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

실태조사 조사지표 확정 및 설명회	대학별 실태조사 실시	온라인 조사 [전수조사]	서면조사 [전수조사]	현장면담조사 [표본조사]
대학교업 (5~6월)	대학 (7~9월)	대학교업, 대학 (9~10월)	대학교업 (9~10월)	대학교업, 대학 (10~11월)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요

기대효과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내실화
 - 장애학생 대학 적응 지원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 제공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연계
 - 대학 기관평가인증(4.3 학생 권익보호 및 소수집단학생 지원)의 확인자료로 보고서 활용
 -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5.1.4 장애학생 및 소수집단 지원)의 확인자료로 보고서 활용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내용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일반현황	1. 대학 기본 정보	9	9
	2. 장애학생 현황	3	3
	3. 장애학생 입학 현황	3	3
	4. 장애학생 장학금 지원 현황	1	1
	소계	16	16
선발·지원 체제	1.1 입시 및 선발 지원	4	4
	1.2 장애학생 지원 체제	14	14
	소계	18	18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2.1 교수·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	6	6
	2.2 교수·학습 지원	16	16
	2.3 진로 및 취업 지원	6	6
	소계	28	28

1.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준비 방법

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내용

구분	항목	문항 수	
		일반대학	원격대학
시설·설비	3.1 매개시설	4	4
	3.2 내부시설	5	5
	3.3 위생시설	2	2
	3.4 안내시설	2	2
	3.5 강의실	2	2
	3.6 도서관	2	-
	3.7 강당	2	-
	3.8 식당	2	-
	3.9 학생지원시설	3	-
	3.10 기타	3	1
	소계	27	16
장애학생 만족도	4.1 선발·지원 체제	3	3
	4.2 교수·학습 지원 및 운영	9	9
	4.3 시설·설비	6	-
	소계	18	12
	합계	107	90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1. 대학정보공시 개요

- 대학정보공시 항목(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 공시기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 원자료 조사시기: 2026년 8월
 - 공시시기: 2026년 8월
 - 공시방법: 직접 입력
 - 공시내용: 2026년 장애학생지원체제 및 운영 현황 공개
 - 자료기준일: 장애학생지원체제 현황 2026년 4월 1일 기준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 시간 2025. 3. 1. ~ 2026. 2월 말일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2.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기준 연도	구분	전체 재학생 수	장애 재학생 수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지적·자폐		기타		계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중증	경증
2026	대학													
	대학원													
	계													

- **【전체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정원내·외 재학생수(장애학생 포함, 휴학생 제외)
 - ※ 대학원은 전체 대학원(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재학생수를 합산하여 입력
 - ※ 통폐합대학의 경우, 통합대상 대학 재학생 수도 포함
- **【장애 재학생수】** : 2026. 4. 1. 기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원내·외 장애 재학생수(휴학생 제외)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 종류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으로 구분하여 입력(중복장애의 경우 주 장애 기준으로 작성)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정도’ 구분 참고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2.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O/X)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O/X)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O/X)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인력			약칙 및 규정	장애어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분)
				센터장	센터장 자격 [①-④ 중 선택]	전담 겸직	지원 부서명	전담 겸직			

-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시행 유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4호 관련, 신·편입학 모두 포함)
-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 2026학년도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등록자 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4호 관련, 신입학 및 편입학 포함)
- **【특별지원위원회 유무】**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장애학생지원센터 유무】**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유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2.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O/X)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O/X)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O/X)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인력			약칙 및 규정	장애어재 프로그램 운영시간 (분)
				센터장	센터장 자격 [①-④ 중 선택]	전담 겸직	지원 부서명	전담 겸직			

-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현황
-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센터장 자격】**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센터장이 갖추고 있는 자격(①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②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③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하나만 선택)
-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지원인력】**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 수가 9명 이하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직원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대학 중 센터 외 추가 지원 직원 현황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2.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장애인 특별전형 유무 (O/X)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자 수	특별지원 위원회 유무 (O/X)	장애학생 지원센터 유무 (O/X)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장애학생지원센터 외 인력			학칙 및 규정	장애이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분)
				센터장	센터장 자격 [①-④ 중 선택]	전담 겸직	지원 부서명	전담	겸직		

- **【학칙 및 규정】** : 2026. 4. 1. 기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해당 조항을 명기하고, 학칙 및 규정에 미규정 시 '해당 없음' 으로 표기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 : 2025. 3. 1. ~ 2026. 2월 말일 기간 중 대학의 장이 이행한 교직원·보조인력·학생 등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시간 합계를 분 단위로 입력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

II. 대학정보공시 이해

2. 대학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		수혜 장애학생 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O/X)	장애학생 지원 계획 (한글/워드)
일반교육 지원인력	전문교육 지원인력			

-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수】** : 2026. 4. 1. 기준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국가근로장학사업 및 자체 보조인력 인원 전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일반 교육지원인력(대학생, 일반인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 **【수혜장애학생수】** : 2026. 4. 1. 기준 교육지원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수
-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여부】** : 2026년 1학기 기준 장애 재학생 대상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 수립 여부
- **【장애학생 지원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2026년 장애학생 지원 계획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려야 함)
 ※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시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편의시설 구축 현황, 보조공학기기 구비 현황, 대학생할 지원 계획 등 포함
 ※ 장애학생 지원 계획은 문자를 소리 및 점자 등으로의 변환을 위해 편집 가능한 한글 또는 워드 파일로 공시해야 함(PDF파일은 이미지로 인식하여 변환 불가)



4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지원 방법

고윤재(이화여자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경력과정)

장애유형별 교수·학습지원 방법

발표: 이화여자대학교 고운자



이화여자대학교
EWHHA WOMANS UNIVERSITY



EWHA THE WORLD
EWHA THE FUTURE



진행

1. 학습자료 지원(접근성 지원)
2. 교수자와 협력하기
3. 합리적 수준의 시험편의지원
4. 교육지원인력 운영
5. 보조공학기기와 AI의 활용
6. 현장에서 만난 어려운 사례들



Introduction

장애학생지원센터 관련 통계



**전국 장애대학생
만여 명**

- 일반대학 29440명
- 전문대학 1,604명
- 매년 다양한 교수-학습지원 요구 증가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담인력
0.9명**

(4시간제 대학 기준)

대학원의 대학에서 1명 내외의 실무직과
장애학생의 학습-생활-건강-영양 업무를 함께 담당



**교육지원인력
6.0명**

- 일반 교육지원인력
- 전문 교육지원인력(특기, 수석(동학) 등)
- 상담-교육-재정-건강-평가까지
센터 실무직자 모두 담당



장애대학생 현황

- 최근 장애대학생 재학현황(대학원생 제외) -2023년, 414개 고등교육기관

단위: x, y, z

장애영역	장애학생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계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시각장애	428	8.1	281	7.8	175	8.5	643	19.6	521	20.8	322	18	1,369	13.3	772	13.5	487	13.0
청각장애	758	14.4	371	11.6	385	18.8	401	9.3	234	9.3	167	8	1,757	12.1	805	10.6	362	14.4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1,832	34.8	1,048	32.7	783	38.2	2,522	58.8	1,442	57.5	1,080	60	4,284	45.6	2,491	43.6	1,863	48.6
지적장애	1,305	24.8	833	25.9	472	23.0	82	1.4	33	1.3	29	1	1,367	14.3	866	15.1	301	13.1
자폐성장애	426	8.1	354	12.3	32	1.6	14	0.3	13	0.5	1	0	440	4.8	407	7.1	33	0.9
기타 장애	517	9.8	314	9.8	203	9.9	480	10.5	263	10.5	187	10	967	10.1	517	10.1	390	10.2
계	5,262	100.0	3,212	100.0	2,050	100.0	4,282	100.0	2,506	100.0	1,786	100	6,984	100.0	3,715	100.0	3,836	100.0

※ 출처: 쉽게 알아보는 2023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2023. 4. 1.)

1. 학습자료 지원(접근성 지원)

시각장애	대체자료(점자, 음성), 이미지 자료 변환, 촉각 자료
청각장애	동영상 자막, 수어통역
지체장애	키보드 조작, 스캔파일, 강의자료
발달장애	쉬운 설명문, 상세한 단계별 설명자료, 반복 사용
기타	읽기학습장애(대체형식자료, 텍스트-음성변환, 오디오북)

적용대상 문서 강의계획안, 교과과정표, 수강안내문, 강의교재(도서), 시험지, 답안지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1

- 대체자료(점자, 데이지파일) 개념 알기
- 디지털 접근성 이해하기

2

- 운영방안 결정: 교육지원인력, 외부 서비스(복지관, 공공도서관) 연계
- 예산 확보
- 운영절차: 신청접수, 서약서, 제작기간, 사후 관리(도서관리)

3

- 대체자료 제작 매뉴얼 제작: 대학교재, 강의자료 특성 기반
- 교내 타부서 교육(홈페이지 공지사항, 행사 운영, 학생소통)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기존 안내문

- ❶ 학정교류협정대학 개설 교과목
- ❷ 자세한 등록금 및 납부방법은 해당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 확인 필요
- 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 내역이 자동 취소됨

변환 원칙

쉬운 설명문

- ❶ 다른 대학교에서 예는 수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❷ 수업 비용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❸ 등록금을 꼭 내세요.
- ❹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신청한 수업이 취소됩니다.
- ❺ 궁금한 점은 학과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어려운 행정용어
→ 쉬운 말



긴 문장
→ 단계별 설명



도움 요청
방법 추가



2. 교수자와 협력하기

- 교수적 지원을 형평성의 훼손, 특혜라는 오해
- 장애학생의 학업능력에 대한 의문, 더 쉬운 전공이나 과목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 지나친 배려와 관심이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학습권의 침해를 하는 경우

- 수강신청, 강의실 환경, 교육지원인력 배정, 시험평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관계
- 지속적인 교수자 교육: 공문, 신입교수 교육, 장애학생 지도교수 간담회
- 교강사도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원체계



💡

실무 Tip 편의제공이 수업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음. 지름길이나 수업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일



교강사를 위한 강의지원안내서 및 강의계획서 예시

장애유형별 수강과목 담당교수를 위한 강의지원 안내서

1. 시작강의계획서 교수 학습지원 방법

시작강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시작강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시작강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시작강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 시작강의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

법적 근거 명시 (학칙 제57조제2항):
교강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는 공식적 기준점.

초기 전달 유도: '학기 첫 주에 면담을 통해'
→ 신재적 수요 파악을 위한 장치.

* 상세한은 학칙 제57조제2항에 의거하여 학기 첫 주에 교과제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출석, 결석, 과제 및 시험에 관한 교수학습지원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담당교수 또는 장애학생지원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과제 및 평가 부분에 있어 가능한 지원 유형에 대해서는 미해당입니다.

강의 관련	과제 관련	평가 관련
시작강의: 평가, 학제자료 제공 중간강의: 대필도우미 배치 기말강의: 할부제 접근이 가능한 글 제공, 대필도우미 배치	제출일 연장, 대체과제 제공	시작강의: 평가, 출석 기록의 제공, 시험 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배치 중간강의: 교수시행용 시험평가용 실시 기록장제 / 시험시간 연장, 대필도우미 배치

실제 지원 내용은 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예시 제공: 대필도우미, 평가, 시험시간 연장 등 지원 가능한 유형을 사전에 나열하여 정보의 비대칭 해소.

→ 주제별(강의, 과제, 평가), 장애유형별 지원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 특별전형제도(입학), 우리대학 장애학생지원제도 등 기본정보 제공



3. 합리적인 수준의 시험편의지원

-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시험편의지원 프로세스

```

    graph LR
      A[시험신청 접수] --> B[교수자 안내]
      B --> C[지원범위 결정]
      C --> D[학과 행정실]
      C --> E[장애학생 지원센터]
      D --> F[지원 제공]
      E --> F
  
```

시험신청 접수

- 공지(2주전)
- 학생상담

교수자 안내

- 지원예시 설명
- 행정적지원

지원범위 결정

- 심사
- 방법 결정

학과 행정실

장애학생 지원센터

지원 제공

- 강의실 예약
- 시험지 제작
- 감독조교 배치
- 보조공학기기 준비



장애학생의 시험편의지원 신청하기

STEP 1



**교과목 담당교수와
면담
(1차 협의)**

교과목 특성 및 평가 방법 확인
학생의 장애 특성 및 필요 지원 공유

STEP 2



**시험 편의지원요청서
제출**

학생이 필요한 시험 편의지원
사항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STEP 3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교수 / 학과와 협의
(2차 협의 및 확정)**

지원 가능 여부 및 구체적 지원 방법
논의 후 최종 확정



**담당교수(학과)사무실에
편의지원 사항 별도로
확인하기**

확정된 지원 내용 공유 및
시험 운영 방식 최종 조율

실무 Tip

장애학생의 자기동호기술 함양, 학교행정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 유도



장애유형별 시험지원 평가의 예시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	 자폐성장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자, 확대 시험지 또는 음성변환이 가능한 파일 시험지 제공 • 시험시간 연장(1.5배) • 대필도우미 배치 • 보조공학기기 사용 허가 • 별도 시험장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시험 서면방가로 대체가능 • 별도시험장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5배) • 별도시험장 • 대필도우미 배치 • 보조공학기기 사용허가 • 감독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연장(1.5배) • 별도시험장 • 대필도우미 배치 • 시험방식 변경

실무 Tip
실제의 지원내용은 교육적 어려움과 교과목 특성 등에 따라 결정



장애인 시험편의 매뉴얼

수능시험	중증장애 국가공무원	토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시각장애(점자): 1.7배 시간제공, 음성시험지 제공,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 경중시각장애: 1.5배 시간제공, 확대시험지(118%, 200%, 350% 중 택1), 확대독서기 개인지참 가능 • 뇌병변 등 운동장애: 1.5배 시간 제공 • 청각장애: 지필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시각장애: 연결 1.5배시간 제공, 전 달도우미, 컴퓨터 및 점자, 확대 제공 • 지체장애: 상지, 하지 • 뇌병변장애: 1.5배 시간제공, 컴퓨터 제공, 필답연접, 문자통역, 면접위원과 거리조정(1.5m 내외로) • 청각장애: 수어통역사 지원, 필답연접, 문자통역 및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관련 자료 서면 제공, 면접시간 1.5배 연장 • 기타: 장애유형과 정도, 필요성 검토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읽기시험 시간연장(4시간-150분-113분-90분 차등 제공), 답안지 대필, 보조공학기기 허용, 문제지 확대(118%, 141%, 200%) • 지체장애: 상지(2배-1.5배 차등), 하지(1.5배-1.2배 차등), 답안지 대필, 보조공학기기 허용 • 뇌병변장애: 읽기시험 시간연장(2배-1.2배 차등), 답안지 대필 • 청각장애(중증): 읽기 평가만 성적표에 명시 •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의 경우 장애 정도를 통해하여 결정

※ 자료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6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채용공고 토익위원회 장애인 응시규정



교육지원인력 대상 워크숍

이화나래넷 중간워크숍 - 장애학생과의 대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지원,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발표: 000(컴퓨터공학과 3학년, 시각장애)



발표 내용

1. 자기소개
2. 나의 학교생활
3. 가장 좋았던 나래넷 경험
4. 나래넷들에게 하고 싶은 말



5. 보조공학기와 AI의 활용

-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업무(개인대여, 대학보유)
- 일반 학습기기(노트북, 태블릿PC)를 포함하여 보조공학기기의 개인 보유가 늘어나면서 공용 기자재 대여 케이스는 줄어들고 있음.
- AI활용이 어떻게 장애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변화시키는지 주목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지체장애학생	 발달장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읽기 프로그램(스리드) •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넷) • 독서확대기 • OCR 프로그램 • 점자프린터 • 확대 독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 송수신기 • 하이람 루프 시스템 • 문자음역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낮이 조절 책상 • 스캔딜 테이블 • 특수 마우스 • 트랙볼 마우스 • 왼손키보드 • 태블릿PC •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관리 기기(타이머) • 시각 스케줄 보조 도구

실무 Tip 장애유형과 함께 실제 학습환경에서의 교육적 어려움을 기반으로 제공



보조공학기기 사례(2026년)



하이람 루프



점자출력기(단독기능)



휠체어 급속충전기

장애보완적인 SI활용 사례

시각장애 사진찍어서 즉시 텍스트 추출하기, 그래프 설명 듣기

청각장애 영상자료 요약, 실시간 자막, 회의록 생성기

지체장애 음성-텍스트 변환, 음성명령 활용, 문서초안 작성

발달장애 어려운 내용 쉽게 반복해서 설명듣기, 단계별 할일 알려주기, 예
상문제 생성, 시험공부 계획 세우기

실무 Tip 보조공학기기와 함께 보완적으로 접근성 향상,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

Q&A

5

장애유형별 생활지원 방법 및 지원 사례

김미옥(대구대학교)



01. 개요 및 법적 근거

장애학생 지원의 법률적 책무와 지원 원칙

장애학생 편의제공 개요 및 목표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 및 생활권 보장

(장애로 인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환경)



물적 지원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인적 지원

교육지원인력 및
봉사유형
근로장학생 배치



취학 편의

이동 수단 및
주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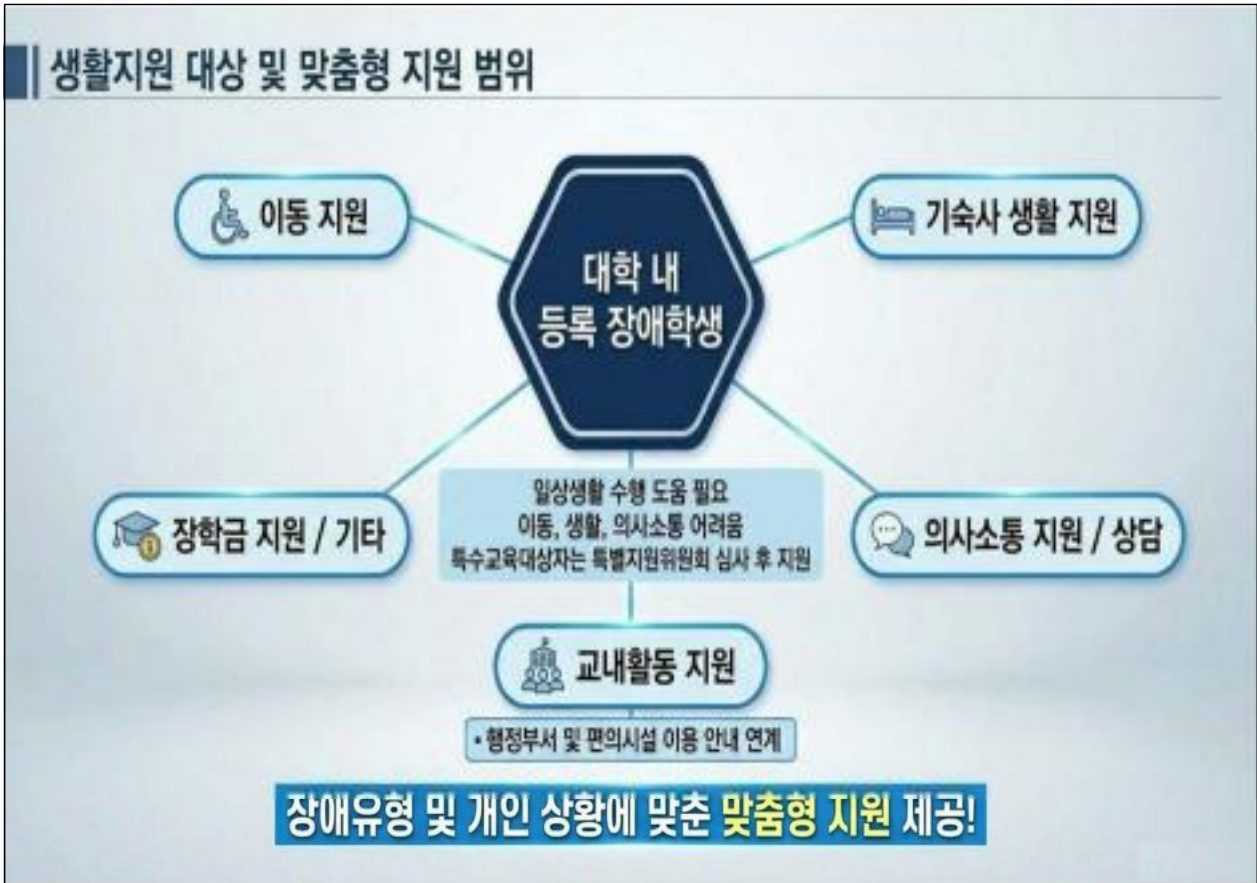
정보 접근

자막, 화면해설,
웹 접근성

장애학생 지원 3대 법적 프레임워크		
※ 위 법령 미준수 시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권리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장애인복지법 (제40조)
핵심 의무: 물적/인적 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 편의제공 적극 강구 의무	핵심 의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불이익 금지 및 지원부서 설치 강제	핵심 의무: 장애인 보조조건 동반 출입 거부 금지 등 일상적 권리 보장

02. 생활지원 대상 및 범위

생활지원의 주요 영역



생활지원 실무 세부 가이드: 이동 및 기숙사



이동 지원

- 내용: 교내 이동보조 (강의실, 기숙사, 행정실, 편의시설 등). 이동 동선 파악 및 안전확보.
- 대상: 시각, 보행이 어려운 학생, 수동휠체어 사용 학생.

- 유의사항: 시간 엄수, 안전사고 예방.



기숙사 생활 지원

- 내용: 식사보조, 개인위생관리, 실내이동, 휠체어 옮겨타기(신체활동), 물품 이동/정리(택배), 세탁(가사활동), 등교준비 등 일상생활 보조.
- 대상: 시각, 지체/뇌병변, 발달.

- 유의사항: 장애학생의 과도한 주문 통제, 도우미 학생의 과도한 개입 방지, 학부모 개입 주의.

지원대상 및 생활지원의 주요영역 - 기숙사 생활 지원

우선 입사 제도

장애 정도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기숙사 우선 선발권 부여
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우선 선발 제도 적용

생활 지원 매칭

- ✓ 룸메이트 지정: 지원인력 학생을 룸메이트로 배정하여 야간 및 일상생활 보조
 - ✓ 시설 지원: 장애인실 배정 확보 및 필요 가구 비치 허용
 - * 예: 침대 덮어짐방지 가드, 비데 등은 개인이 비치
- ** 중증장애학생의 경우 보호자 또는 활동지원인 동반입사 허용함

기숙사 신청 및 호실 배정

1. 학기 시작 전 기숙사 모집공고시 장애학생, 기숙사 도우미 희망자들에게 공지사항 안내 및 신청현황 발송
2. 신청한 장애학생들의 룸메이트 여부, 특정호실 고장, 휠체어 사용 여부, 장애학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숙사와 업무협의
3. 도우미 매칭, 최종호실 배정 후 입사
4. 직계가족 및 활동지원인 기숙사 출입허가 요청
(공문,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확인서류)
5. 기숙사 생활지원

지원 대상 및 생활지원의 주요 영역

* 의사소통 지원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생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필요시 수어통역사 배치, 문자, 필담, 보조기기 등 활용

** 유의사항: 장애학생의 사전 요구사항 파악

** 대상: 청각, 언어장애 등 소통에 어려움 느끼는 학생

* 교내활동 지원

도서관 이용, 과제보조(자료검색), 동아리활동, 교내외 특강, 교내 개설 진로취업 및 업톡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식사도움, 행정부서 이용 안내, 편의시설 이용 안내 등 캠퍼스 내 다양한 활동을 지원

** 유의사항: 시간 엄수, 안전사고 예방

** 대상: 재학중인 장애학생 전체

* 상담

학습 및 생활지원, 교우관계, 학교생활 부적응, 불안, 취업, 학사, 건강, 기숙사 입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함. 내용에 따라서 교내 학생생활 상담센터나 학교와 연계

** 유의사항: 비밀 유지,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 사이에서 중립 유지

** 대상: 재학중인 장애학생 전체

장학금 지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금에 대한 안내• 대학의 자체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제도 활용* 학업장려장학금(등록금 범위 외)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수장애학생장학금(등록금 범위 내) 대상: 과락없이 12학점 이상 이수한 장애학생으로 각 등급별(A-C)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내 직무발굴 → 장애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매칭 (봉사유형 도우미로 활용) 예: 학습지원은 받지 않고 가속사 생활지원만 받는 장애학생이 동일수업을 수강하는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경산시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03. 생활 지원 실무

신청 및 절차

지원 신청 및 업무 진행 절차

장애학생 지원 요청 교육지원인력(도우미) 신청

장애학생: 개인별교육지원계획 신청
지원인력(도우미): 도우미활동 신청
전문학습지원인력: 채용

- ** 신청기간: 수강신청 기간
- ** 기속사 신청: 기속사 신청기간

필요서비스 확인 및 지원 계획수립

장애학생이 신청한 내용을 토대로
지원계획 수립

- ** 사전 상담 및 요구 파악 필요
- ** 지원내용 및 시간 조율
- ** 기속사와 긴밀한 업무협의 필요
- ** 신입생 1~2월 상담 필수

지원인력 매칭, 서비스 제공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인력
매칭 및 사전 교육, 서비스 제공
도우미부재 등 긴급지원 요청사:
장애학생지원센터 긴급 도우미 활용

- ** 학기 초 매칭 완료 및 서비스 제공
- ** 지원실행 및 지원 후 피드백

04. 생활 지원 실무

운영 및 관리

교육지원인력(도우미) 매칭 및 관리

도우미 활동학생 사전 교육

- * 교육일정: 3월, 9월 둘째 주 월~수 중 2회, 2시간씩 실시
- * 역할 및 책임(시간 미준수 등 불성실 근로금지)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 근무태도 및 윤리교육, 안전교육
- * 활동내용 점검(출근부, 근거자료), 장애학생도 함께 교육 실시

매칭 기준

- * 동일학과, 직전학기 도우미활동자 우선 매칭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 * 가족사 생활지원의 경우 사전 세심한 상담을 통해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의 성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원인력 운영 유형 >

전문학습지원인력(대학의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교정사

일반지원인력(대학의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 대학원생, 일반인, 휴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국가근로장학금사업): 교내 학부생 중 재학생, 학기초과자는 10학점 이상 수강자

05. 실제 운영 사례

우수사례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해결 노하우

신학기 시각장애 신입생 대상: 4일의 골든타임



신학기 신입 시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및 캠퍼스 내 필수 동선에 대한 '보행훈련(4일)' 집중 실시.

이 4일의 훈련이 4년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운영사례



족지도 훈련



강의실



주차장

운영사례



조별 활동



화장실 지원



이동지원

운영사례



기숙사 생활지원



학기 초 도우미
교육



발달장애학생 식사지원

운영 사례: 기숙사생활 지원 우수사례

활동지원인, 학부생 동시 지원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거나 눕지 못하는 지체장애학생을 위해 활동지원인이 등교준비, 강의실 이동지원, 식사 지원 및 기숙사 지원을 담당하고, 룸메이트 학생이 자기 전 화장실 지원 및 침대까지 이동지원을 지원함.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의 원활한 소통으로 2년 연속 룸메이트로 함께 생활 함.

공지사항 안내, 긴급상황시 정보접근

청각장애학생을 위해 기숙사 내 안내사항을 방송안내를 포함하여 게시판 공지, 문자서비스를 제공함

긴급상황 대비하여 1층 전체 장애안실에 비상벨 설치하여 야간 상황실과 연결되도록 함

장애학생간 상호 지원

청각장애학생과 지체장애학생이 룸메이트로 기숙사에 함께 생활하며 지체장애학생은 기숙사내 안내방송 내용이나 모닝콜을 해주고, 청각장애학생은 지체장애학생의 식사, 위생관리, 옷갈아입기 등 기숙사 생활 전반을 지원해 줌.

[별첨] 도우미 활동 및 생활지원 실제 운영 사례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위기 상황, 그리고 해결 노하우

본 섹션은 센터 실무자들의 즉각적인 위기 대응 및 갈등 조정 능력 향상을 위해, 실제 접수된 다양한 현장 사례들을 진단 카드(Case Study Card) 형태로 재구성한 현장 매뉴얼입니다.

현장 진단 매뉴얼: 긴급 의료 상황 대처

<p>Crisis Card</p> <p>지적장애 약물 과다 복용</p> <p>[상황] 감기약을 빨리 낮기 위해 평소 2배 과다 복용.</p> <p>⇓</p> <p>[조치] 단과대학 즉각 119 후송 -> 센터 상황 공유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p>	<p>Crisis Card</p> <p>시각장애/뇌전증 응급실 동행</p> <p>[상황] 뇌전증으로 수업 중 쓰러짐. 부모 연락 두절.</p> <p>⇓</p> <p>[조치] 센터 직원 및 기숙사 도우미가 응급실 동행. (결과: 자퇴 후 이듬해 타 과 재입학, 이후 수업 중단).</p>	<p>Crisis Card</p> <p>보행 중 발목 염좌</p> <p>[상황] 비오는 날 시각장애 학생 발목 부모는 센터에 전적으로 의존.</p> <p>⇓</p> <p>[조치] 교내 보건소 안내 및 센터 차량으로 이동/진료 지원. 부모에게 병원 방문 권고.</p>
---	---	--

현장 진단 매뉴얼: 민감한 일상 및 심리적 위기

<p>긴급 화장실 지원 (임기응변)</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지적 장애학생</td> </tr> <tr> <td>문제</td> <td>식당 화장실 긴급 상황. 동성(남성) 직원이 부재한 상황.</td> </tr> <tr> <td>해결</td> <td>센터 군필 근로학생에게 긴급 투입 요청. 다이소에서 바지와 속옷 신규 구매 후 전달 및 뒷처리 완료. 식당 사장님께 추가 처리 협조.</td> </tr> </table>	대상	지적 장애학생	문제	식당 화장실 긴급 상황. 동성(남성) 직원이 부재한 상황.	해결	센터 군필 근로학생에게 긴급 투입 요청. 다이소에서 바지와 속옷 신규 구매 후 전달 및 뒷처리 완료. 식당 사장님께 추가 처리 협조.	<p>심리적 불안 (정서 지지)</p> <table border="1"> <tr> <td>대상</td> <td>중/고교 시절 교실 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td> </tr> <tr> <td>문제</td> <td>수업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발생 (119 출동).</td> </tr> <tr> <td>해결</td> <td>3월 학기 초 센터 직원이 수업에 직접 동행하여 안정적 참여 지원. 정서적 지지와 격려 지속 제공.</td> </tr> </table>	대상	중/고교 시절 교실 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	문제	수업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발생 (119 출동).	해결	3월 학기 초 센터 직원이 수업에 직접 동행하여 안정적 참여 지원. 정서적 지지와 격려 지속 제공.
대상	지적 장애학생												
문제	식당 화장실 긴급 상황. 동성(남성) 직원이 부재한 상황.												
해결	센터 군필 근로학생에게 긴급 투입 요청. 다이소에서 바지와 속옷 신규 구매 후 전달 및 뒷처리 완료. 식당 사장님께 추가 처리 협조.												
대상	중/고교 시절 교실 내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												
문제	수업 중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 발생 (119 출동).												
해결	3월 학기 초 센터 직원이 수업에 직접 동행하여 안정적 참여 지원. 정서적 지지와 격려 지속 제공.												

갈등 조정 사례 1: 룸메이트 및 도우미 피로도

코골이 갈등

[민원인]
수면장애 예민함

VS

[시각장애학생]
고의가 아니므로 수용 불가.

[조정 결론] 센터 및 기숙사 4자 대면 지속. 결국 장애학생의 호실 변경으로 민원 종료.

도우미의 감정 노동 피로도

[장애학생] 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을
도우미에게 지속 하소연.

VS

[도우미] 심리적 피로도 극대화, 교체 요청.

[조정 결론] 도우미 심리적 보호 조치 및 2학기 도우미 교체 매칭.

갈등 조정 사례 2: 레드 플래그 (중대 개입 필수)

사회성 한계 및 스토킹 민원

[상황]
자폐성 학생의 특정 여학생 무단 촬영, 선배 반말, 스토킹 민원. 지적 시 타인에게 캐묻는 행동.

[강력 조치]
교우관계 기본 예의 지도. 인권센터 연계 대인관계 지도 및 학부모 상담 (결과: 2학기 자퇴).

도우미에 의한 심리적 지배 (가스라이팅/범죄)

[상황]
도우미가 시각장애학생과 교제하며 부모와 분리 유도(기숙사 보호자 지정 변경 요청). 이후 도우미 집에서 거주시키며 대출 강요, 알바 강요, 외부 연락 차단.

[강력 조치]
경찰, 부모, 외부 전문 기관 즉시 연계하여 분리 및 보호 조치.

현장의 가장 큰 벽: 부적응과 과도한 개입

Pain Point 1

학생의 학업적 한계 (후천적 실명)

맹점에 대한 불안감(한쪽 시력 상실, 다른 쪽 근거리만 확보).

점자 무지,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 및 음성지원 프로그램 사용 미숙.

*지원 조치:

지도교수, 동일전공 선배, 시각장애동아리 회장 연계하여 지지체계 구축.

Pain Point 2

보호자의 선 넘은 개입 (담당자 감정노동)

- 장애학생의 불만만 듣고 도우미 출근부 서명 거부.
- 담당자 말투를 문제 삼아 복도에서 샷대질에 가까운 행동.
- 본인 투병(간암 말기)을 호소하며 장시간 전화 요구 및 교수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센터에 전가(자립성 훼손 우려).

현장에서 봉사유형 운영시 어려움

- * 발달장애 학생 수업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도우미학생이 매칭 꺼림. (예: 요구사항 안들어주면 물어버림)
- * 의뢰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이 입학했을 경우 학교에서의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 간의 관계가 수평이 아닌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일부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과 과한 요구로 인해 도우미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됨 → 도우미 활동 가능 학생 감소 요인이 됨
- * 시급 인상되어도 도우미 학생은 매년 감소함
 -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우미학생의 직접 경험 또는 소문)
 - 동일수업 도우미가 장애학생을 지원했는데 장애학생보다 학점이 낮게 나올 경우, 학생들이 필기를 안함
 -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및 요구(수업시 공지사항을 학부모에게 전달 요구, 도우미 활동 내용 보고 요구 등)
 - 전공과 맞지 않거나 중도 포기

06. 개선 방향

현장의 어려움 및 개선 방향



- * 지원인력 수급 어려움: 학습 및 생활지원도우미 특히 기숙사 생활도우미, 발달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너무 부족함
- * 업무 담당자 번아웃: 개인별 요구사항이 너무 다양하며 긴급상황(건강문제, 갈등 등), 학부모 상담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 과다 소모
- * 행정 업무 부담(이중입력): 장학재단 출근부+수기출근부 작성, 근거자료 제출로 인해 도우미 학생들의 부담 증가.



- * 개선 방향:
 - 출근부 입력 간소화
 - 담당자 시가진작 프로그램 강화
 -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배치

Q&A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053-850-5202~8

6

장애이해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고다운(인제대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의 방향

<p>법적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p>참여형·체험형 교육의 중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시청을 넘어 직접 체험하는 교육 - 경험이 인식을 바꾼다
<p>긍정적 경험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시절의 경험들이 긍정적이었다 - 긍정적 경험만 남겨도 교육은 성공적 	<p>대학의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게 체험 기회 제공 - 긍정적 경험으로 사회 확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vs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교육 대상과 주관 부처, 교육 내용의 차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

구분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2
교육 명칭	사회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 대상	소속 직원(교직원) 및 학생(재학생) 전체	소속 근로자(교직원, 상시 근로자) 전체
주요 내용	장애 이해, 차별 금지, 인권 보장 등 일반적 내용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고용 촉진 및 고용 사례 등
실적 관리	매년 실적 보고 시스템에 입력 및 증빙 제출	교육 일지 및 서명부 3년간 자체 보관 (점검 시 제출)
미이행 조치	기관명 언론 공표, 관리자 특별교육 시행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소리로 소통하는 하모니

- 시각/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
- 예술을 통한 장애 장벽 완화
- 구성원 만족도 매우 만족

통합행사

- 교직원 의무참석: 직장내장애인식개선교육
- 재학생 참여 독려: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
- 동일한 행사 사진과 결과보고서 활용

효율적인 예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 연계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예산 활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학과 행사들 대학 행사로 확대

- 장애인의 날 학과 행사를 학교 행사로 확대
-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예산 지원
- 물품 및 다과 지원 등 실질적 지원
- 플랜카드, 엑스배너 학생들이 직접 제작



학생 주도형 기획 및 운영

- 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직접 기획 및 진행
- 장애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기회
- 행사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
- 다양한 장애유형 체험 부스 운영
- 참여 학생들의 내적 친밀감 형성



체험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

- '장애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
- 일상 속 불편함과 장벽을 간접 체험
- 편견 없는 공존을 위한 실현 의지 고취
-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선 태도 변화
- 사회적 가치 실현의 구체적 사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수어공연 프로그램



※ 초상권 보호를 위해 인물 부분만 시로 이미지 처리되었습니다.



과제의 전환

수어 교과목 과제물을 학기말 공연으로 전환



공간의 활용

도서관 로비, 학생회관 라운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실내 공간 활용



자연스러운 노출

노래에 맞춘 수어로 청각장애인 간접 경험 기회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제작 장벽 완화

- AI 도구 활용 제작하여 접근성 향상
- 기술 부족해도 참여 가능
- 아이디어 중심 참여 유도

과정 중심 교육

- 영상 기획·제작 과정 학습
- 장애 이슈 검색 및 탐구 → 교육적 효과 창출
- 자연스러운 감수성 내재화

콘텐츠 자신화

- 학생 참여 → 콘텐츠 생산 → 교육 활용
- 지속적 인식개선 효과
- 장애 이슈를 재고하는 계기 제공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Korea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의무를 넘어 공감으로 잇는 캠퍼스

“

평소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장애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상 속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 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편견 없는 공존을 위해 내가 먼저
실천할 태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재학생 후기-

경험해두셔서
감사합니다



7

장애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법

임동철(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법

- 직접 취업시키는 게 아닌 '통로'가 되어 주는 것 -

한경국립대학교 장애학생 대외업무 담당
임동철 주무관(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담당자)

목 차



01.

**장애학생을 위한
취업지원**

장애학생이 마주한 현실과
변화하는 기업 고용 시장의
이해



02.

**장애학생을 위한
창업지원**

비장애학생과 구분되는
창업 환경의 차이점과
제도적 이점



03.

**프로그램 사례
및 모델**

모두가 만족하는
윈-윈-윈(Win-Win-Win)
취업지원 모델과 실제 사례

장애학생의 진로 및 취창업, 어느 부서의 고유 업무일까?

원칙과 규정

- * 해당 부서: 교내 취업지원부서 및 창업지원부서
- * 법적 근거:
 - [특수교육법 제30조] 진로 및 취업지원 명시적 조항은 부재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5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장의 현실

- * 교내 취업을 및 서비스 관리는 결국 취업지원부서의 고유 업무
- *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업무가 이뤄지는 '사각지대' 발생
- * 핵심 과제: 취업은 취업부서에서, 창업은 창업부서에서 주도해야 합니다.

대학 내 유일한 '통로'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할은 직접적인 취업처 발굴이나 직무 교육이 아닌 장애학생과 전문 지원부서 및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통로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장애학생이 캠퍼스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벽 (핑퐁 현상)

① 장애학생: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어디서 신청하나요?

② 취업지원부서: 장애가 있으시니 장애학생지원센터로 가보세요.
(유형별 용대 곤란, 취업 가능성 의구심)

③ 장애학생지원센터: 취업 업무는 취업지원팀 소관인데요?
(취업/직무 정보 부족)

[2차 장애의 발생]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넘어, 캠퍼스 내 행정적 단절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기업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3.1%

민간기업 100인 이상 = 의무고용

(근로자 100명 중 3명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3.6% → 3.8% (24년~)

민간기업 (100인 이상): 3.1% 유지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민간기업은 사업주의 '실제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취업 전선에서 장애학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고민해 봅시다: 근로학생을 뽑을 때 장애학생이라면?

대학 현장의 딜레마	기업의 시선 (Mirroring)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근로학생 1명을 선발해야 한다면?</p> <p style="text-align: center;">마음으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우려가 따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응대 등 특정 업무의 어려움 * 물리적 업무 환경의 제약 * 누군가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기업 역시 똑같이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채용 시 장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자원의 추가 투입이 필요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도전'이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결과: 부서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저하 우려</p>	<p style="text-align: center;">그래서 과거에는 차라리 벌금(부담금)을 내는 쪽을 택했습니다.</p>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그럼에도 기업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려는 이유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h3 style="margin: 0;">비용적 압박 (Push)</h3> <p style="margin: 0;">미이행 부담금의 지속적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월 2,156,880원 (2026년 기준 1인당) 부과 * 기업의 재무적 계산 변화: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보다,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이득이다. 	<div style="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h3 style="margin: 0;">사회적 압박 (Pull)</h3> <p style="margin: 0;">ESG 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랜드 리스크: 부담금을 돈으로 때우는 방식이 기업의 ESG 평가와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줌 * 명단 공표 강화: 미이행 기업 명단 공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채용 시장에 진입
--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대기업 중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붐

모기업(1,000인 이상)이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정착되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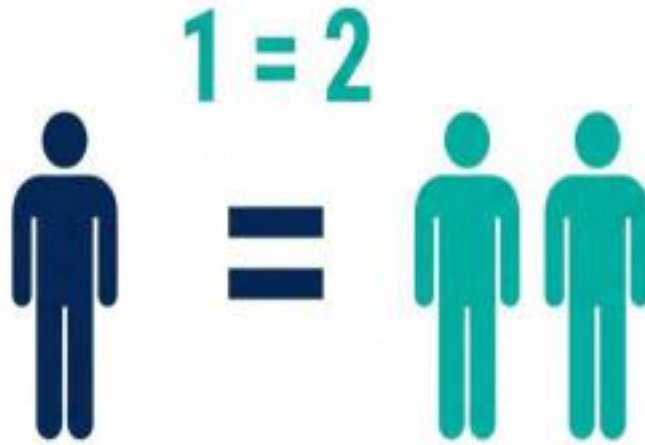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35년 만에 첫 달성

- 고용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 장애인 고용 30만9846명...전년 대비 1만1192명↑
- 민간기업 고용률 3.10%...전체 증가분 84.9% 차지
- "공무원 및 100인 미만 기업은 여전히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최근 10년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026.04.29.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증장애인 고용에 혜택을 주는 “더블 카운팅”



중증장애인 1명 채용 시,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보도자료

2026. 2. 10.(화) (2026. 2. 10.(화) 18:00) 18: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

정부는 2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27년 3.3%, '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시행령 제25조) 이번 개정은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최근 2~3년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3.1%가 끝이 아닌 시작



- 의무고용률 상향 법제화:** 7년 만의 상향 조치로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수
- 재무적 리스크 폭증:** 장애인 미고용 시 1인당 월 2,156,880원(2026년 기준) 부담금 발생
- ESG/브랜드 타격:**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 기준 강화로 '돈으로 때우는 방식' 종식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장애인 근무지 환경



과거의 인식 (10년 전)
보호작업장 / 단순 조립 공장

- * 일반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격리 시설
- * 단순 반복 작업 위주
-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설 다수



현재의 현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쾌적한 사무직 / IT 직무 / 양질의 근로환경

- * 삼성SDS 오픈헨즈: 초봉 약 3,400만 원 수준 (근로자 270명 규모)
- * LG 하누라: 일 8시간 근로, 약 3,100만 원 (모사 복지/노조 협약 적용)
- * 삼성전자 희망별숲: 일 4시간 근로, 월 140만 원 수준
- * 근무 환경이 일반 대기업 수준으로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장애인 근무지 환경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과거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장애인 근무지 환경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2026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 목적 | 장애대학생 지원 체계 강화 및 실질적 학습권 보장
 권역별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과 교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참여 활성화

 진로·취업 지원	 통합 지원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권역 내 장애대학생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캠프, 채용박람회,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 개인 적성 및 소질에 따른 진로설계 맞춤형 지원 • 지역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취업여건 조성 	<p style="text-align: center;">전국·권역 단위 진로/학습 종합 지원 및 거점 선도대학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단위 대규모 진로취업 박람회 및 프로그램 운영 • 권역 내 타대학 멘토링, 교육지원인력(Pool) 관리 • 보조기기 지원 및 공통 교육자료 공동 개발배포 	<p style="text-align: center;">발달장애 학생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특성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지원 우수 성과공유 및 권역확산 • 취업준비부터 적응까지 유관기관 맞춤형시스템 가동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2026년 사업 선정대학 현황 (총 14개교)

진로·취업 지원 유형 (9개교)	통합 지원 유형 (3개교)	발달장애 특성화 지원 유형 (2개교)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수도권 강남대, 경민대, 단국대, 서정대, 인천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중부권 한국교원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동남권 부산경상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호남권 남부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제주 제주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수도권 한경국립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대경권 대구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동남권 부산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수도권 협성대</div> <div style="text-align: center;">대경권 호신대</div>

2026년 선도대학 프로그램

한경국립대학교

- ① 진로탐색 프로그램
 - 취업컨설팅 프로그램(내년)
 - 진로상담 및 성과 멘토링(비대면)
 - 발달장애학생 지원 프로그램(업초빙 캠프)
 - 군무원 채용 설명회
- ② 장애학생 기업맞춤형 프로그램
 - 현장견학 및 인턴십 프로그램
 - 협약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 ③ 역량강화 프로그램
 - 공공기관 준비 자격증 프로그램
 - 생활용 취업포털리노 제작
 - 컴퓨터활용능력
- ④ 장애대학생 취업캠프
- ⑤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
 - 장애대학생 연한 활동지원 및 워크숍
 - 장애대학생 지도교원 지원
 - 장애학생 기초학습 콘텐츠 공유
- ⑥ 장애학생 지원 지역사회 행사 지원

강남대학교

- ① 학부모와 함께하는 장애학생 진로취업 설명회
 - 진로설명, 취업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 소개 연계 방안 안내
- ② 자격증 기초반
 - 체계적 학습 지원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③ 자격증 심화반
 -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적 커리큘럼 및 조기 대비 필요성
- ④ 장애학생 취업캠프
- ⑤ 공기업 특화반
 -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채용 확대에 따른 취업 준비 지원
- ⑥ 취업역량 강화반
 - 장애학생 실질적 취업 지원 업무 역량 지원

합성대학교

- ① 발달장애 대학생의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 음악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 미술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 전문 예술인 취업을 위한 프로필 제작 프로그램
- ② 시 기반 예술표현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시활동역량강화프로그램


인천대학교

- ① 장애대학생 진로설계 프로그램
 - 직업 세계 및 가치관 이해와 탐색
 - 진로 목표 설정
- ② 장애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 어학자격증-해용시험 등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취업 시험 대비 프로그램
 - 사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스킬 과정
 - 직장인 예절교육 과정
- ③ 장애대학생 취업 전문가 컨설팅
 - 1: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로 탐색
 - 자기소개서 및 입사서류 피드백
 - 실전 대비 모의연락 코칭
- ④ 장애대학생 직무탐색 특강
 - 최신 취업 트렌드 및 산업별 전망 특강
 - 특스널 브랜딩 및 이미지 메이킹 솔루션
- ⑤ 장애대학생 맞춤형 취업캠프
 - 취업 실무 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장애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청년 창업의 두 갈래: 장애대학생 vs 비장애대학생 창업 환경 비교

만 34세 이하 '청년' 혜택과 '장애인' 우대 제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물리적·행정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비교 항목	장애대학생 창업	비장애대학생 창업
자금 조달	특화 자금(최대 2천만 원) + 정부사업 우대 가점(0.5~1점)	청년/대학생 대상 일반 경쟁형 지원사업 참여 (별도 가점 없음)
용자 조건	장애인 전용 자력 용자 및 보증 한도 우대 적용	기술력 및 매출 증빙 위주의 표준 심사 적용
보육 공간	장애인창업보육센터 입주 우대 (임대료 면제-감면)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및 공유오피스 치열한 경쟁 입주
인프라 접근성	배리어프리(Barrier-Free) 인프라 필수 (시각/청각 보조, 휠체어 등산 등)	일반적인 강의실, 카페, 오피스 등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 활용
행정/실무 인프라	1:1 전담 멘토링 해당 필요 (행정적·신체적 행정 장벽 돌파)	네트워킹, 정부 사이트 검색 등 자체 정보 탐색으로 행정 절차 진행
편로 계획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수익계약 활용 (안정적 B2G 진입)	철저한 시장 경쟁을 통한 B2C, B2B 편로 직접 계획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장애인이기업을중심지원센터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장애대학생 창업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단계별 실무 경험부터 글로벌 ESG 창업, 전문 기업을 육성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생태계 조망

 <h3 style="margin-top: 20px;">01. 장애학생 청년인턴캠프</h3>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직무 체험 및 실무 역량 강화</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맞춤형 인턴십 연계: 실질적인 직무 체험을 통해 취업 및 창업의 기초 체력 확보 ✓ 캠프 연계 실무 훈련: 단기 집중 취업캠프를 통한 조직 문화 이해 및 실무 투입 역량 배양 	 <h3 style="margin-top: 20px;">02.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h3>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ESG 아이디어 및 글로벌 역량</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이 되어 사회적 가치(ESG)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 ✓ 경쟁력 및 글로벌 마인드셋 강화: 창업 실전 피칭 경험과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예비 창업가 도약 	 <h3 style="margin-top: 20px;">03. 장애인기업가 역량강화센터</h3> <div style="background-color: #008080; color: white; padding: 5px;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특화 교육 및 AI 경영혁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분과 특화 교육: 예비·기창업자의 상황 및 장애 특성에 맞춘 '소상공인 분과' 및 '스타트업 분과' 밀착 지원 ✓ 미래형 비즈니스 컨설팅: AI 경영혁신 프로그램 도입 및 1:1 맞춤형 컨설팅 바우처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생산성 극대화
--	---	--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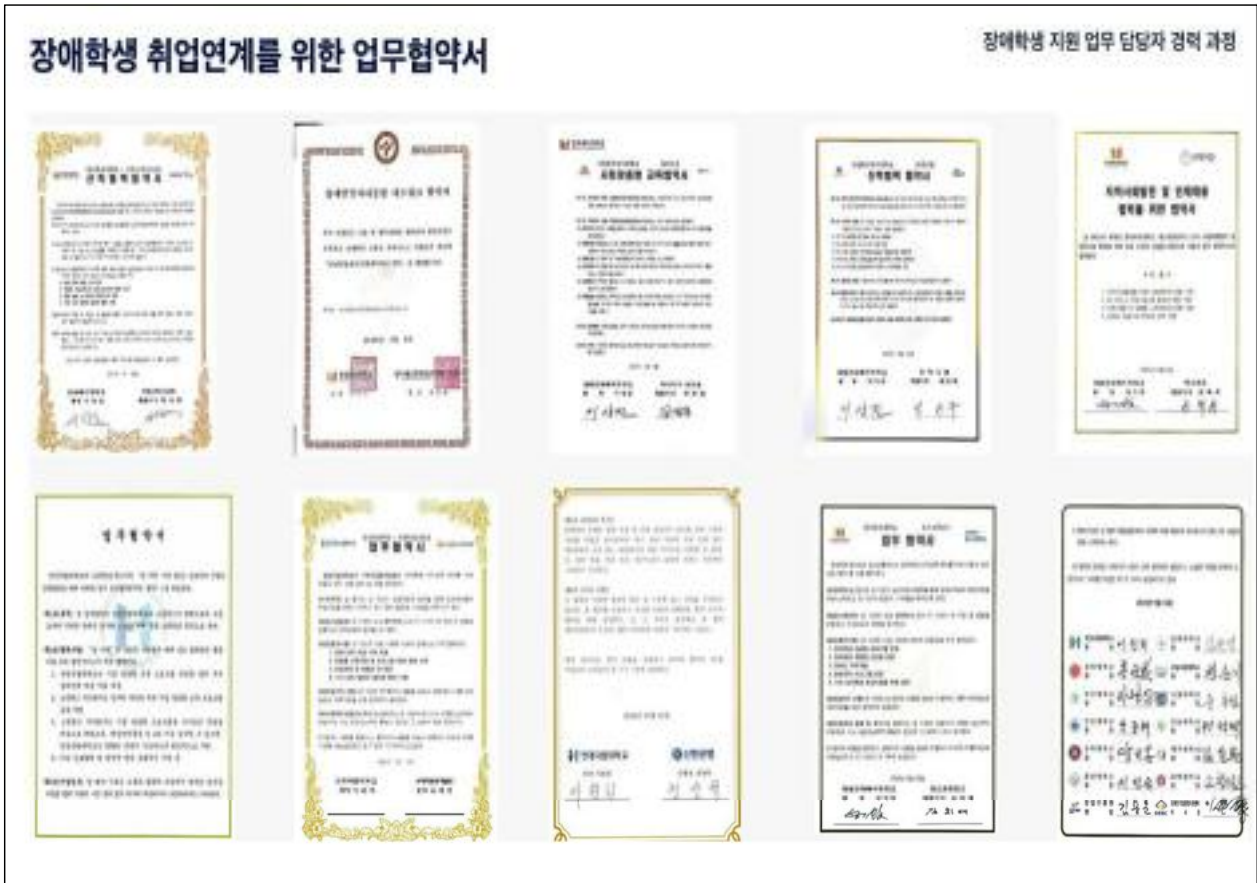
2026년 선도대학 프로그램



장애학생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 경로 (다인/1인) 제시 및 실무 중심의 창업 역량 강화

Disabled Students Start-up & Talent Raising Track

- ① D-START Basic 공통 창업 인큐베이팅
 - 공통 기초 교육 후, 학습자 선택에 따른 [트랙별 과정] 분리 운영
- ② D-START Social 다인 창업 인큐베이팅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팀 기반 창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 ③ D-START Creator 1인 창업 인큐베이팅
 - 개인 역량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플랫폼 창업
 - 유튜브, SNS, 인터넷 신문, 디지털 서비스 등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

장애학생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방법

- 직접 취업시키는 게 아닌 '통로'가 되어 주는 것 -

감사합니다.

8

모두의 캠퍼스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임희진(서울대학교)



<h2>목차</h2> <p>Contents</p>			
	<h3>0.</h3> <p>문화 역량</p> <p>Cultural Competence</p>	<h3>1.</h3> <p>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의무 및 관련 법령• 설치 및 운영• 운영 사례	<h3>2.</h3> <p>특별지원위원회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요 및 관련 법령• 구성• 역할• 운영 사례



**장애학생지원센터
개원 심포지엄**

모두의 캠퍼스

일시
2024. 12. 3.(화) 14:00-16:00

장소
71-1동 206호

문의 | 서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02-880-8786-8787, snudarb@enu.ac.kr

센터 개원 심포지엄
의 캠퍼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SNU BBF Wheelability websit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SNU logo and menu items like '홈', '소개', '문의'. Below the navigation, there is a search bar and a location map of the SNU campus.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SNU BBF Wheelability' and includes a list of services and a detailed map of the 37th floor labeled '37동 1층 BARRIER-FREE MAP'. The map shows various accessibility points with icons for ramps, elevators, and restrooms. A legend on the right explains the icons. Below the map, there is a list of key statistics: '33,368명' and '33,368명'.

SNU BBF Wheelability

- 서울대학교 장애인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
- SNU BBF Wheelability 3D 지도
- SNU BBF Wheelability 3D 지도
- SNU BBF Wheelability 3D 지도

37동 1층 BARRIER-FREE MAP

33,368명

33,368명



WJH2024연구 23호 138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23, Vol. 23, No. 2, pp. 261-287
<https://doi.org/10.15733/aje.2023.2.23.138>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쟁점*

신우담(신용교수)
임희민(신용교수)
최지현(신용교수)

논문 요약

장애인 고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장애인 고등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에 있어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고등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의 실질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 학생의 여부는 다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등교육 법, 제, 지원 관련 법령과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포함에 대한 특별전형, 장애대학장 교육복지지원금 확대장기 등에 살펴보고, 그 국내외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하였다.

주요어 : 장애인 고등교육, 장애대학장 교육복지지원금 확대장기

고등교육 수준에서는 특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즉 통합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관에서도 「특수교육법」, 고등교육 관련 조항의 「고등교육법」, 이같은 거론이 낱길 수 없는 대안이다. 또한 「특수교육법」, 고등교육 관련 조항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연구에서 국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특수교육법이 있는 미국의 경우 해당 법에 고등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특수교육법이 없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 각 학교급에 해당하는 법에 특수교육 등 장애인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의 같은 미국의 「장애인교육향상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역시는 21개까지의 장애인향 교육을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학교법」, 과 「대학법」,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법」, 이 특수교육 등 장애인 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6년 「특수교육법」, 평생교육 관련 조항의 「평생교육법」, 이같은 같은 맥락이다. 본래 평생교육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발전해 왔으나, 이러한 역사가 무뎠기에 평생교육 정책은 국가정책적 강화를 위한 인적자본개발 정책으로 변질되어 소외된 사람이 평생교육으로부터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신민식, 2020).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7년 제정된 「특수교육법」, 이 평생교육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은 특수교육과 평생교육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왔다(김두현, 박이진, 정진숙, 2016). 장애인 부모 단체를 필두로 한 지속적인 요구의 결실로 2016년 여말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한 통합된 「평생교육법」, 이 발의하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예산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김두현 외, 2016).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을 조사하여, 결실을 맺어오는 등 실제적인 변화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0.

문화 역량

Cultural Competence

성인지 → 장애인지

-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 교육 내용 및 방법 등)

 1. 성인지 역량 향상에 필요한 내용
 2. 정책의 성별 관련성 등 성인지 관점의 이해
 3. 양성평등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의 이해
 4. 양성평등 사회 및 문화의 이해
 5.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인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124

0.

문화 역량

Cultural Competence

성인지 → 장애인지

- 공무원 대상 장애인지적 정책형성 교육안 개발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x 서울대학교)
- 장애인지: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기획, 집행 및 평가함에 있어서 '장애'라는 변수를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최대한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장애에 대한 민감도 또는 감수성을 높이는 접근 또는 관점(이혜경 외, 2017)
- 장애인지제도: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안 및 실행되는 제도(이혜경 외, 2017)

장애인을 고려한 업무 사례 토론

주제 1: 장애인을 고려한 행사 계획 수립

○○○○ 행사 계획 계획안

- 일시
- 장소
- 참석자
- 세부 일정

주제 2: 장애인을 고려한 대외 훈련 계획 수립

○○○○ 대외 훈련 계획안

- 일시
- 장소
- 참석자
- 세부 일정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 정책: (예시) 마스크 보급 안정화 대책
- 예산: 코로나19 확산과 예방 이후 마스크 보급량만 한정 발생, 마스크 보급 예산 수요 급증에 따른 가격 상승, 시너의 불인과 불만 고조
- 내용: 마스크 보급 확대, 일부의 마스크 생산 확대 관련 전격적 관리, 판매량 확대 일부
- 과정: 수급불량 심감 → 시장 과열방지 유통안착 및 선구매자 보장 → 마스크 등 애용에서 방역금지 고지 취소 → ...

번호	문제점	개선안
1	회원이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마스크 지급 문제	주요 회원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2	회원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음	...

○○○○ 행사 계획 계획안

- 일시
 - 고려사항 내외 중립(장애인차별차별차) 적용을 생각할수 있는 일인지?
- 장소
 - 고려사항 내외 사각 및 저층 장애인차 접근할수 있는 장소인지?
- 참석자
- 세부 일정
- 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 지원 예산, 인력 및 수어통역 제공 등
- **개선점**

○○○○ 대외 훈련 계획안

- 일시
- 장소
- 참석자
 - 고려사항: 장애인 동행자 동반인원 포함하는지?
- 세부 일정
 - 고려사항: 장애인 편의 시설 준비 세심화 포함하는지?
- 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인: 대외 홍보 자료, 장애인 복지 시설 구비 등
- **개선점**

0.

문화 역량

Cultural Competence

문화로서의 장애, 그리고 장애 문화 역량

- **문화 역량:**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문화로서의 장애, 그리고 장애 문화 역량**
 - “일례로 통합학급의 일반교사가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원격 교육 등을 이수하고 장애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 개론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문화 역량은 신체 및 정신 건강 분야에서 (의사, 간호사, 상담사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 차이에 의한 격차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 및 환자의 만족도와 건강을 증진하는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다.”
- 90% 이상의 미국 의대는 교육과정엔 문화 역량 교육 포함 (Kobay 11, 2015)
- 미국간호대학협회는 학사, 석사, 박사 간호학 과정엔 문화 역량 교육 포함 (Kobay 11, 2015)
-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 태도, 기술 향상 및 환자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Beauch 9, 2009)

오시는 길

장애학생지원센터 110호 110호
장애학생지원센터 110호 110호

서울대학교에는 다양한 학생회 단체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학생회: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회 특성

장애학생지원센터 110호 110호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110호

장애학생 지원 센터

장애학생 지원 센터

장애학생 지원 센터

함께 만드는 모두의 캠퍼스

110호

1.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법적 의무 및 관련 법령

법적 의무 및 관련 법령

-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함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 지원 부서로 같음할 수 있음)
-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배치해야 함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물적 지원, 인적 지원 등을 적극 강구·제공해야 함
-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제3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49조

1.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설치 및 운영

장학연구과 서울대학교 장애학생 지원 체계 마련

- 연구 목적: 『2024-2025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계획(안)』 수립
- 연구 방법
 - 자문회의: 기관(부서)장 및 실무자 8인 대상 장애학생 지원 현황 파악 및 계획(안) 검토
 - 델파이조사: 단과대학 학생부학장, 기초교육원 교원, 특수교육과 교원·연구원,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 15인 대상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 재학생(학부생 및 대학원생) 532인 대상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IV. 2024-2025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 계획(안)

1. 추진 배경



2. 전달 및 시사점



1. 추진 방향 및 과제(안)



구성원별 담당 업무

담당업무	전화번호
센터 업무 총괄	02-880-6824
센터 행정 관리	02-880-5070
센터 업무 관리 장애학생 지원 관리 장애학생복지지원위원회	02-880-6786
장애학생 지원 기획 장애학생 지원 및 상담	02-880-6786
장애학생 지원 인력 운영 국외 사업 운영 장애학생 지원 및 상담	02-880-6787
사무, 회계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학생 지원 및 상담	02-880-6787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설치 및 운영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기본 업무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편의 제공
 - 장애학생 10명 미만인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부서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및 특별지원위원회 기능 수행
- 대학 외부기관과의 협력
 - 장애학생의 입학, 학습, 생활, 진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MOU 체결 혹은 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장애인도서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등

1.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례

운영 사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 학습지원센터 - 시각장애대학생 '학습교재지원-2주서비스' 협약

시각	청각	신체	지능	기타	합계
학업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모두의 캠퍼스를 위한 노력

- 시각장애학생 소속 학과 협조 (특히 대학원생)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협조

1.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운영 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주간 & 문화다양성주간

5.22
11:30 ~ 13:30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행사



모두의 캠퍼스를 위한 노력

- 다양성위원회 협조



문화다양성주간
5.18 ~ 5.22



5.19 커피데이
일일후계예찬
보람지은 상상물 공연
12:30 - 13:30
체육문학연구동 206호



5.19 커피데이
장애인식개선주간
뉴 커피로직 행사
11:30 - 14:00
학생회관 앞

2.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2.

특별지원 위원회 운영

개요 및 관련 법령

특별지원위원회 개요 및 관련 법령

-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의 경우 →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9명 이하인 대학의 경우 → 장애학생 지원 부서로 같음할 수 있음)
- 특별지원위원회 운영절차 예시(안)
 -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함
-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신청 시 회의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

2.

특별지원 위원회 구성

구성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2.

특별지원 특수위원회 운영

역할

특별지원위원회 역할

- ①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②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③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함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사항 예시(안)
 -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교육 및 서비스 등 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살비, 지원인력, 기자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특별지원 특수위원회 운영

운영 사례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례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
-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은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별지원위원회 구성 사례(총 11명)
 -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7명)
 - ※ 학생, 교무(학사), 입학, 시설 등의 부서 소속 교직원
 -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2명)
 - ※ 과정(학부·대학원), 전공, 성별, 장애 유형·정도 등 고려
 -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2명)
 - ※ 타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직권, 지역사회 장애 관련 전문가 등

2.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례

운영 사례

특별지원위원회 운영 사례

- 특별지원위원회 심의 사례
 - 외국인으로 본국에서는 등록 장애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
 - 심의를 통해 1년간 장애학생으로 등록
 - 지원(조정)안내문, 지원인력, 이동지원차량 등 지원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지만 장애로 인하여 명백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지적성장으로 인하여 명백하게 지원이 필요하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심의를 통해 1년간 장애학생으로 등록
 -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조정)안내문 등 지원 제공
 - (상담센터, 교수학습센터) 심리상담, 멘토링·튜터링 등 지원 제공

감사합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 연수 만족도 조사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QR코드를 스캔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인 쇄 2026년 6월
발 행 2026년 6월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 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디폴리스 A-23층
전 화 02-6919-3800
홈 페이지 www.kcue.or.kr
인 쇄 처 경성문화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 이 자료집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직무연수
(장애학생 지원 업무 담당자 경력 과정(1차))



| 주최 |



| 주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